연구윤리 질의응답집

CRE
연구윤리정보센터
Center for Research Ethics information

비매품
14190
9 788996 895220
ISBN 978-89-968952-2-0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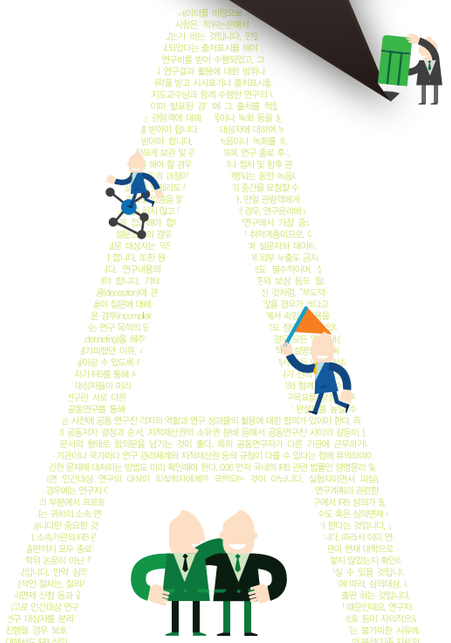
한국연구재단 NR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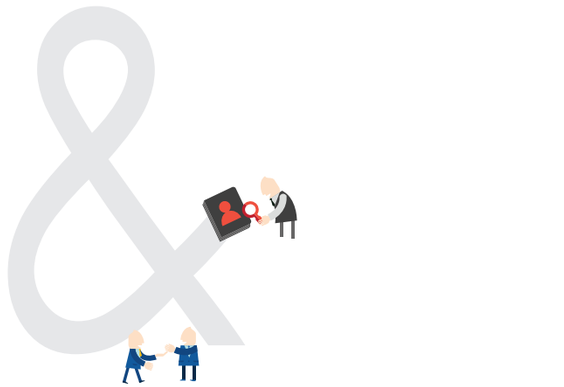
KIRD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CRE 연구윤리정보센터
Center for Research Ethics information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발 간 사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내에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했습니다. 과학기술과 학문 또한 단기간에 발전을 지속하여 2014년 세계 10위의 논문 발표 실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여전히 논문 표절, 조작 등의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여 연구결과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윤리의 부재가 원인이므로 연구윤리의 확립이 국가적 당면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와 학계가 지난 10여년 동안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대부분의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자체 연구윤리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자리잡혀가고 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또한 과학기술인의 연구윤리 인식 제고와 책임있는 연구문화 확립을 위해 연구윤리 교육과정(집합 · 이러닝) 시행과 연구윤리정보센터를 운영해왔습니다.

특히 연구윤리정보센터(http://www.cre.or.kr)에서는 연구윤리 저변 확대를 위해 교육책자 및 동영상, 웹툰, 모바일 앱 등을 제작 · 보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구자로부터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 온라인 Q&A와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책자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약 3년간 상담센터에 접수된 연구윤리 관련 질의와 자문내역을 분석하여 빈도와 주제별로 분류하고 총 6개 주제로 재구성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연구윤리 질의응답집'을 통해 더 많은 연구자가 보다 쉽게 연구윤리 고민을 해결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모든 연구현장에서 연구윤리 인식이 견고히 뿌리내려 '책임있는 연구문화'가 정착되길 희망합니다.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장



Contents

chapter 1 **연구설계** 12

Q. 01 연구과제의 결과를 재사용한 학위논문의 작성이 가능한가? /14

Q. 02 연구대상자를 녹취 혹은 녹화하는 연구에서 사전 동의를 확보해야 하는가? /15

Q. 03 사회적 약자 대상 연구에서의 연구절차 및 유의사항은 무엇인가? /16

Q. 04 심리학 연구에서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한 연구 설계 및 사전 보호조치에는 무엇이 있는가? /17

Q. 05 공동연구에서의 연구설계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 /18

Q. 06 자신의 인체유래물을 분석하는 자가실험의 경우에도 IRB 심의를 받아야 하는가? /19

Q. 07 인간대상 연구에서의 2차자료 분석에 관한 IRB 심의가 필요한가? /21

Q. 08 IRB 심의면제 대상 연구에는 무엇이 있는가? /22

Q. 09 대학병원 전임의가 일반인 대상 연구 시 IRB 심의를 받아야 하는가? /24

Q. 10 자신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의 연구데이터 수집 시 유의사항은? /25

Q. 11 석사 학위논문 연구에서 설문지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IRB 심의를 받아야 하는가? /26

chapter 2 **연구수행** 28

Q. 12 타인의 연구결과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한 연구수행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 /30

Q. 13 학술행사에서 구두발표 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도 표절의 대상이 되는가? /31

Q. 14 설문조사로 수집한 연구데이터를 분리하여 각각 개별논문으로 출판할 수 있는가? /32

Q. 15 동료의 연구데이터 무단 복사 행위가 연구윤리에 어긋나는가? /33

Q. 16 공동연구 후 출판된 논문과 공동저자 일부가 참여한 논문에서의 중복성과 연구윤리 측면은 어떠한가? /34

Q. 17 심사과정에서 취소된 논문과 신규 논문에서의 유사성이 문제가 되는가? /35

chapter 3

연구성과 활용

36

Q. 18 지도교수로부터 논문지도를 받아 학술논문을 출판할 경우 적절한 공로배분 방법은 무엇인가? /38

Q. 19 포스터 발표 당시의 교신저자를 후속 논문 출판 시에도 교신저자로 인정해야 하는가? /39

Q. 20 연구를 수행하고 이직한 이후 발표된 연구보고서의 집필진에서 제외된 경우, 저자권을 요구할 수 있는가? /40

Q. 21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연구과제 보고서를 기초로 한 박사학위 논문의 작성이 가능한가? /41

Q. 22 자신이 참여한 연구결과를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타인이 발표한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42

Q. 23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저자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다른 저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는가? /43

Q. 24 임상연구 논문에서 공동저자로 등록되려면, IRB 신청서에도 공동연구자로 반드시 등록되어야 하는가? /44

Q. 25 IRB 심의를 받지 않은 연구논문에 대해 해외저널에서 IRB 심의서를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45

Q. 26 박사학위 승인 이후 게재 예정인 학술논문이 심사과정 중인 사실을 학위논문에 표기해야 하는가? /46

Q. 27 학위 논문 심사과정에서 표절이 발견된 경우, 학위논문 심사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47

Q. 28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을 수정하여 재투고 한 경우, 편집위원장 권한으로 게재 판정이 가능한가? /48

Q. 29 승인된 학위논문을 출처를 밝히고 학술지 논문으로 투고할 수 있는가? 학위논문의 학술지 재출판이 중복게재에 포함되는가? /49

Q. 30 학술대회에서 구두 혹은 포스터 발표한 연구내용을 정규 학술지에 출판할 경우 중복게재에 해당하는가? /50

Q. 31 학위논문의 학술지 논문 재출판 과정에서의 지도교수 등의 저자권 부여 기준은 무엇인가? /51

Q. 32 한번의 설문조사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에서 대상자를 분리하여 각각 개별 논문으로 분리하여 출판할 수 있는가? /52

Q. 33 대학원생이 출판한 학술지 논문을 학위논문에 출처표기 없이 재사용 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인가? /53

Q. 34 연구보고서의 출처를 밝히고 학술지 논문으로 재출판 할 수 있는가? /55

Q. 35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내용을 심화하여, 학술지 논문으로 출판하는 것이 중복게재인가? /56

Q. 36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내용을 학술지 논문으로 출판하면서 기존의 교신저자를 제외할 수 있는가? /58

Q. 37 연구용역 결과 논문집이 발간된 상황에서, 연구용역에 참여한 연구자가 연구결과보고서를 축약하여 논문으로 출판한 경우, 중복게재 인가? /59

Q. 38 국내 학술지에 출판한 논문에서의 실험데이터를 출처표기 없이 활용하면서 해외 저널에 후속 논문을 출판한 경우 중복게재 인가? /60

Q. 39 학술지에 출판한 논문의 일부를 학위논문에 사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자기표절인가? /61

Q. 40 유사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각각 출판한 학술지 논문을 묶어 저서로 출판할 경우 연구윤리 및 저작권 차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가? /62

Q. 41 사회과학연구에서 동일한 연구모형을 수립 후 한국과 미국 데이터로 결과를 분리하여 각각 한국과 미국에 출판할 경우 자기표절에 포함되는가? /63

Q. 42 A와 B라는 실험데이터로 각각 논문을 출판한 후, A와 B의 연계성을 주제로 하는 신규 논문 출판하는 것이 중복게재 인가? /64

Q. 43 대학원생이 참여한 연구용역과제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학위논문을 제출하면서 보고서에 대한 인용을 빠트렸다. 연구부정행위 인가? /65

Q. 44 공동연구에 참여하여 출판한 논문의 일부를 학위논문에 재사용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66

Q. 45 국내학술지에 영문으로 출판한 논문을 몇 년 후 해외 학술지에 이중게재 하였다. 해당 연구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67

Q. 46 공동연구를 통해 도출된 공동데이터를 가지고 연구 흐름과 연구의 방향이 다른 두 논문의 출판이 가능한가? /68

Q. 47 자신의 선행 논문에서 이론적 배경이나 연구방법론을 일부 문장이나 단락을 출처표기 없이 재사용한 경우 연구부정행위에 포함되는가? /69

Q. 48 공공기관 소속 연구자가 연구보고서를 수정 · 보완한 학술논문으로 출판할 경우 중복게재 포함되는가? /70

Q. 49 질적 연구의 수행 결과, 연구결과 양이 많아 두 편으로 분리하려고 한다. 연구 대상자 및 방법 등이 동일할 경우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가? /71

Q. 50 학위 논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술지에 논문으로 발표하는 경우 자기표절에 해당하는가? /72

Q. 51 중복게재와 자기표절의 정의와 차이점은 무엇인가? /73

Q. 52 국내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해외학술지에 출판 가능한가? /74

chapter 4

연구공동체

76

Q. 53 동료 대학원생이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실험결과를 만들고 그래프로 작성하는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목격하였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78

Q. 54 민간위탁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제책임자의 자녀가 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 /79

Q. 55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성과에서 사업개시 이전 성과를 포함한 경우 인정할 수 있는가? /80

Q. 56 지도교수가 연구책임자인 과제에 참여한 대학원생 연구원이 수령한 인건비를 지도교수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81

Q. 57 지도교수의 요구에 따라 연구데이터를 넘겨주고, 다른 대학원생이 자신의 연구결과인 것처럼 논문을 작성하는 것은 연구윤리를 위반하는 것인가? /82

Q. 58 의과대학에 소속된 교수가 수집한 환자데이터를 다른 학과 소속의 대학원생에게 주어 논문을 작성해도 괜찮은가? /83

Q. 59 A와 B기관이 공동연구 수행 중에, B기관에서 A기관에 소속된 공동연구자의 동의 없이 학술지 논문을 게재하였다. A기관에서 공식적인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가? /84

Q. 60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사회과학분야와 의학분야 연구자가 모여 공동연구의 수행 후, 독립변수를 달리하여 두 편의 논문으로 각 학문분야에 발표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85

Q. 61 공동연구 참여자 A, B가 후속 연구에서 B가 연구책임자, A가 참여연구원이 되어 선행 연구결과를 재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86

Q. 62 공동연구의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한 박사과정 연구원이 학위논문을 제출하였다. 이후 모든 연구자를 저자로 등록한 학술지 논문을 출판할 경우, 중복게재에 포함되는가? /87

Q. 63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다른 정부용역보고서에 재사용하면서 용역기관의 동의 및 출처표기 없이 사용하였을 경우 연구윤리 및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는가? /88

Q. 64 조사보고서 2권의 90% 가량을 그대로 사용한 책자를 공저자가 발간하면서 소속기관과의 협의 없이 발간하였다. 중복게재인가? /89

chapter 5

연구부정행위

90

Q. 65 논문에 포함된 사진 중 실험전후 결과 사진에서 다른 실험모형의 사진이 잘못 포함된 사실을 발견하였다. 연구부정행위에 포함되는가? /92

Q. 66 A와 B 연구자가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데이터를 수집 후, 각각 다른 주제로 논문을 작성하려고 한다. A와 B 모두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가? /93

Q. 67 논문표절 기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표절검색 프로그램에서의 표절을 결정하는 유사도율(%)이나 명확한 기준, 지침 등이 있는가? /94

Q. 68 단순 실험을 통해 데이터를 제공해준 연구자에게도 저자권을 부여해야 하는가? 저자권을 가지기 위한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 /95

Q. 69 연구부정행위 제보는 어디에 해야 하는가? 부정행위 조사는 어떻게 진행 되는가? /96

Q. 70 부당한 논문저자를 부여받은 자는 연구부정행위대 대한 책임이 없는가? /98

Q. 7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자가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예비조사위원회 명단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가? /99

Q. 72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정될 경우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가? /100

Q. 73 연구부정행위 제보 이후 해당 기관의 예비조사위원회로부터 출석 및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이 때 출석에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는가? /101

Q. 74 지도교수와 학부생이 함께 연구한 내용을 학술지에 출판하면서, 학부생이라는 이유로 저자에서 제외하고 논문을 투고하였다.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제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가? /102

Q. 75 대학 전임교원 채용심사에서 지원자가 제출한 논문에서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었다. 검증주체는 어디인가? /103

Q. 76 학술지에서 논문을 검증하여 조사결과를 해당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통보하였다. 소속기관은 학회의 검증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최종판정 할 수 있는가? /104

Q. 77 연구부정행위 검증 시효가 남아있는 대학의 경우, 5년 이전의 학위논문은 검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105

Q. 78 모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던 중에 표절과 중복게재 의혹이 제기되었다. 학술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106

Q. 79 이공계 연구분야의 저자가 이전에 발표한 논문에서 기술한 바 있는 실험 방법으로 새로운 실험 데이터를 얻어 새로운 논문을 작성할 때 자기표절에 해당하는가? /107

Q. 80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수정 · 보완하여 학술지에 재출판하거나 국내 학술지 논문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해외학술지에 재출판하는 것이 가능한가? /108

Q. 81 이공계 분야의 지도교수가 자신이 지도한 대학원생의 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연구과제의 결과물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행위가 연구윤리위반에 해당하는가? /109

chapter 6

연구성과 관리 110

Q. 82 A 기관에 근무하던 연구자가 소속을 옮겨, A 기관에 재직 당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투고할 경우 소속 표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112

Q. 83 연구위탁기관에 제출한 연구보고서를 논문으로 출판하면서 동의를 확보하지 못하고 감사의 글로 표기하였다. 주관연구기관에서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가? /113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CHAPTER 1

연구설계

Q. 01 ~ Q.11

001 Question

자신의 지도교수를 연구책임자로 한 연구과제에 참여연구원 이었던 대학원생이 연구과제 수행 결과 중 일부를 기반으로 학위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가? 선행 절차 등은 무엇이 있는가?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1) 학위논문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이전에 전문 학술지에 발표한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만일 선 발표된 적이 있는 데이터를 학위 논문에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데이터가 이미 발표되었다는 출처표시를 해야 중복게재의 의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다음으로

2) 해당 연구가 어떤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받아 수행되었고, 그 결과보고서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연구과제 협약에 규정된 해당 지원기관과의 연구성과 발표 및 활용에 대한 범위나 조건 등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즉, 연구결과를 활용할 때 지원기관으로부터 승인을 필요로 하거나 사사표기나 출처표시를 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경우, 해당 가이드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3) 대학원생 연구원이 학위논문에서 사용하는 연구성과의 저자권과 관련한 동의를 확보하여야 한다. 자신이 참여한 부분만을 사용하거나, 지도교수와 함께 수행한 연구의 내용을 활용하여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활용하는 내용(데이터 포함)이 이미 발표된 경우라면 그 출처를 적절하게 밝히고 사용해야 연구윤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002 Question

연구대상자의 대화를 녹취, 기록하여 대화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사전동의 없이 녹취나 기록이 가능한가? 적절한 연구방법은 무엇인가?

연구대상자에 대한 녹음이나 녹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수집될 수 있고,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험 전에 연구대상자의 사전동의를 확보해야 하며 인간 대상 연구에 포함될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IRB를 통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녹음이나 녹화를 수반하는 인간 대상 연구의 경우에는 심의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이때 수집된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해야 하며, 연구 종료 후 3년이 지나면 규정에 의해 잘 폐기해야 한다. 연구대상자에게 녹음이나 촬영을 해야 할 경우, 그 목적이나 절차 및 향후 관리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에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동의 과정이나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녹음이나 녹화가 된다는 사실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아야 하며, 혹시라도 불편할 경우 언제라도 녹음이나 녹화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어야 하며, 그 기록을 파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만일 관람객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이나 촬영을 하고, 개인 정보의 익명성 보장을 하지 않고 연구 결과를 발표할 경우, 적절한 연구방법이 아닐뿐더러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003 Question

사회과학 연구에서 신용불량자(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의 연구절차 및 유의사항은 무엇인가?

사회과학 연구에서 가장 유의하여야 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와 취약자 보호이다. 신용불량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신용불량자가 사회적 취약계층에 포함되는데, 이들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설문 대상자는 익명화 처리를 해야 하며 설문수행자와 데이터 관리자는 완전하게 분리하여 익명처리의 효과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원데이터의 보호 및 외부유출도 금지되어야 한다. 설문의 내용은 연구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연구내용의 설명에 따른 동의서도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므로 설문대상자의 동의(informed consent)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기타, 설문참여에 대한 실비 수준의 보상 등도 필요하다.

'신용불량자' 등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특히 유의해서 진행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 계층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1) 연구대상자인 신용불량자에게 연구자가 어떻게 접근하는가 하는 부분에 유의해야 한다. 신용불량자의 명단이나 정보를 연구자가 확보하는 방법이 합법적이고 정당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보의 상당부분은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일단 연구대상자 집단의 정보 확보가 합법적으로 되었다고 전제하고 연구 진행과정상 유의할 점은 연구자가 연구대상자에게 접근할 수 있었던 합법적인 방법을 연구대상자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이들이 연구자 혹은 사법 당국을 대상으로 자신의 정보를 자신의 허락 없이 유출한 것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3) 위의 두 사항이 해결되고 나면, 연구자는 이들 신용불량자들의 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비밀의 유지를 위한 각종 대책을 수립하고 지켜야 한다. 예를 들어 연구 자료의 분실 · 유출 등과 같은 사건이 발생한다면 연구자에게 매우 곤란한 일이 될 뿐만 아니라 연구대상자들로부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수집된 연구대상자의 정보를 어떻게 비밀유지를 하며 관리할 것인지도 연구대상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위의 사항들을 연구계획서에 충분히 기술하여야 IRB의 심의가 가능할 것이다. 실제 연구수행에 있어서도 심의내용들을 절차에 따라 준수하면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004 Question

심리학에서의 '부도덕적인 행위에 대한 귀인방향 연구'에서 야기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실험절차에서의 속임수 이용(deeption)에 관한 윤리적 문제에 관한 사례이다. '부도덕적인 행위에 대한 귀인방향 연구'와 같이 연구 대상자들이 질문에 대해 속임수 없이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을 경우가 크다고 예상할 때, 또는 연구목적 등을 모두 노출하기 어려운 경우(incomplete disclosure), 연구자는 연구 절차에서 속임수 이용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속임수 이용 연구는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과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어야만 한다. 또한 나중에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debriefing)을 해주어야 한다. 즉, 속임수 이용 연구의 경우 모든 연구 대상자가 실험실을 떠나기 전에 속임수 연구가 불가피했던 이유, 속임수를 이용한 방법, 연구의 실제 목적을 설명함으로써 연구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을 모두 버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속임수 이용 연구에서 모든 연구 대상자에게 debriefing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연구자가 IRB를 통해 사전에 충분히 설득을 해야 하며, 연구가 끝나기 전에 실제 연구목적 등을 알릴 경우 나중에 참여할 연구 대상자들이 미리 알아버릴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연구의 종료와 함께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005 Question

공동연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연구수행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는가?

공동연구란 서로 다른 전문성과 자원을 가진 연구진들이 특정한 연구목표를 달성하고자 협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연구를 통해 제한된 자원과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연구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는 반면에 연구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이 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다.

공동연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동 연구진 각자의 역할과 연구 성과물의 활용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즉 데이터의 수집과 공유방법, 논문의 공동저자 결정과 순서, 지적재산권의 소유권 분배 등에서 공동연구진 사이의 갈등이 많이 일어나므로 사전에 명확히 문서의 형태로 합의문을 남기는 것이 좋다. 특히 공동연구자가 다른 기관에 근무하거나 다른 나라의 연구자인 경우 기관이나 국가마다 연구관리체계와 지적재산권 등의 규정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런 차이로 인한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006 Question

김OO 연구원은 소속 IRB의 심의 없이 자신의 혈액샘플을 분석하는 자가실험 후 얻은 데이터를 포함한 논문을 투고하여 해외 저널에 출판하였다. 이 후 이 논문을 본인의 학위논문에 포함시키고자 하여 자신의 지도교수와 논의 중에 지도교수께서 '자가실험의 경우에도 IRB 심의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 라는 조언을 들었다. 자신의 인체유래물을 분석하는 자가실험 (Self-examination)의 경우에도 IRB 심의를 받아야 하는가?

국내 IRB 관련 법률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 12844호, 2014. 11. 19)에 따르면 인간대상 연구의 대상이 피실험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실험자이면서 피실험자가 되는 경우에는 연구자이면서 연구대상자 이기도 하므로 김OO 연구원은 소속 기관에 설치된 IRB에 문의하여 IRB의 관련 가이드에 따라 연구계획과 관련한 실험방법 및 데이터 처리 부분에서 프로토콜을 진행했어야 했다.

하지만 모든 자가실험 연구에서 IRB 심의가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결정은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설치된 IRB 규정이나 실험의 방법에 따라 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심의면제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가 유의하여야 하는 것은 연구자 스스로 심의대상 여부 등을 자발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IRB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리하여 보자면

1. 소속기관의 IRB 관련 규정에 따른 심의는 연구수행 전에 진행하는 사전심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미 연구 계획, 수행, 출판까지 모두 종료한 시점에서 후속 심의가 불가한 상황이다.
2. 김OO 연구원의 소속 기관인 대학에 설치된 IRB의 규정 등에 따라, 학위 학술지 논문으로 제출한 연구를 수행할 당시 IRB 심의 대상이었는지 그렇지 않은 확인하여 학위논문 심사위원의 질의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만약 심의대상이 아니었다면, 심의대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3. 이상적인 절차는,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해당 연구자가 자가실험의 준비 단계에서 소속 대학에 설치된 IRB에 문의하여 심의대상 여부 및 심의면제 대상인지 식별하고 IRB의 가이드에 따라 심의 프로세스를 사전에 수행하는 것이다. 연구수행 당시에는 IRB의 심의결과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결과를 출판 하는 것이다.

4. 한 가지 유념해야 하는 사항은 인간대상 연구에서 자가실험은 권장하는 연구방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자가실험의 경우 여러 가지 단점을 가지는데,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를 분리하여 실험하는 것이 연구 데이터의 왜곡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피험자 보호 등이 자의적으로 진행될 경우 보호 자체를 보장할 수 없는 문제점 등이 발생하기 쉽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자가실험을 선택할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유를 IRB 심의서에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김OO 연구원의 경우 IRB 심의없이 학술지 논문의 출판까지 이미 종료된 상황이다. 따라서 학위논문으로의 작성 전에 소속대학의 IRB에 문의하여 자가실험 데이터의 재사용과 관련한 조언을 구하고, 학위논문의 작성 방향이나 구성 방법 등에서도 지도교수와 논의하여 적절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007 Question

IRB 심의를 마치고 수행된 1차 자료를 바탕으로 2차 자료분석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2차 자료 분석에 대한 동의서를 받지 않은 경우, 동의서 확보 및 재사용 관련 IRB 심의가 필요한가?

IRB 심의를 진행 할 때에, 연구자에게 이미 수집된 자료의 분석(기존자료의 2차분석)만 하는 연구인지에 대해 물을 수 있다. 본 사례의 경우, 2차 자료 분석에 관한 동의를 확보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IRB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할 수 있다. IRB 심의 시 2차 자료 분석 및 연구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내용이 없었으며, 이후에 후속 연구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후속 연구의 목적과 연구과정 중 개인정보 보호 및 피험자 보호 사항 등과 관련한 별도의 심사가 필요할 수 있다.

008 Question

생명윤리법 내 기관위원회(IRB) 심의면제 대상이 되는 연구는 무엇이 있는가?

일반적인 인간대상 연구에서 심의면제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새로운 연구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고, 그 자료에서 개인 식별 가능한 정보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2) 처음부터 익명으로 보관된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생명윤리법 상 인간대상연구 또는 인체유래물연구라고 할지라도, 법 제15조 제2항 내지 제36조 제2항에 따라 "연구대상자(또는 인체유래물기증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는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

가) 인간대상연구

법 제15조 제2항 내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간대상연구는 일반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이거나, 연구대상자에 대한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연구를 말한다.

제13조(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간대상연구)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연구"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수집 · 기록하지 않는 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를 말한다.

1.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그 환경을 조작하는 연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가. 약물투여, 혈액채취 등 침습적(侵襲的) 행위를 하지 않는 연구
나. 신체적 변화가 따르지 않는 단순 접촉 측정장비 또는 관찰장비만을 사용하는 연구
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이용하여 맛이나 질을 평가하는 연구

라.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이용하여 사용감 또는 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연구

2. 연구대상자 등을 직접 대면하더라도 연구대상자 등이 특정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

3. 연구대상자 등에 대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연구 중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제2호더목에 따른 취약한 환경에 있는 피험자(Vulnerable Subjects)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나) 인체유래물연구

법 제36조 제2항 내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간체유래물 연구는 다음에 해당하는 연구를 말한다.

제33조(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체유래물연구)

① 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체유래물연구는 다음 각 호의 연구로 한다.

1. 연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 기록하지 않은 연구 중 다음 각 목의 연구

가. 인체유래물은행이 수집 · 보관하고 있는 인체유래물과 그로부터 얻은 유전정보(이하 "인체유래물 등"이라 한다)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연구로서 인체유래물 등을 제공한 인체유래물은행을 통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연구

나.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인체유래물 등을 이용하여 정확도 검사 등 검사실 정도관리 및 검사법 평가 등을 수행하는 연구

다. 인체유래물을 직접 채취하지 않는 경우로서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체유래물로부터 분리 · 가공된 연구재료(병원체, 세포주 등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연구

라. 연구자가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개인식별정보를 알 수 없으며,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가 기증자 개인의 유전적 특징과 관계가 없는 연구. 다만,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한 연구는 제외한다.

2.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실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연구

3. 공중보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한 연구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용위원회에 연구 종료 전 연구의 진행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009 Question

대학 병원소속 전임의가 환자가 아닌 일반인 대상 심리척도 연구를 진행할 때, IRB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가? 또 어디서 받아야 하는가?

1.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연구자의 소속 기관인 대학병원에서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설치 및 운영이 의무화 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의 내용과 수집하는 개인정보 등에 따른 심의내용 및 절차에 따른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위의 설명과 같이 연구의 발주처나 연구성과의 출판기관이 아닌 연구자의 소속기관인 대학병원에 설치된 IRB에서 해당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일부 외부 기관에서의 심의를 인정하는 경우, 심의결과를 가지고 소속기관에서의 재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다소 번거롭더라도 소속 대학병원의 IRB를 통해 확인하고 안내에 따라 심의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010 Question

A연구자가 자신의 소속기관이 아닌 B병원에서 자문을 제공하고 B병원에서 수집한 연구데이터를 가지고 자신의 소속기관에 설치된 IRB 심의를 받아 10여 개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때 A는 B병원으로부터 연구승인 및 연구데이터의 제공 및 사용허락에 대한 서류는 획득치 않았다.
A와 B가 간과한 부분은 무엇인가?
이미 발표한 논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생명윤리법 확대 시행 전 · 후 진행여부에 따라 법률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A연구자는 B병원으로부터 수집한 연구데이터의 공유나 활용에 대해 B병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 따라서 A연구자가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논문을 발표하였을 경우, B병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관련 자료를 활용하였다는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B병원 또한 A연구자의 연구 수행 사실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IRB의 심의를 받지 않고 수행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이후 해당 학술지에서 IRB 심의 결과를 요청한다면 정상적인 심의결과의 제출이 불가할 수밖에 없으며 해당 저널로부터 후속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 중대한 사안일 경우 해당 저널에 관련 사실을 제보하여 후속조치가 내려지도록 해야 하며, B병원에서는 연구데이터의 유출로 인한 피해사실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장치를 신속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011 Question

석사 학위논문 연구에서 설문지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IRB 심의를 받아야 하는가?

생명윤리법에서의 인간대상 연구에 대한 심의대상에 석사학위 논문이 포함되는가에 대해서는 기관별 IRB의 운영지침이나 기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설문지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민감성과 설문 대상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간단히 정리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참고할 수 있다.

첫째, 박사학위 논문과는 달리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대체로 생명윤리법에서 말하는 '연구'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또 반드시 IRB 심의를 받지 않고 지도교수의 적절한 지도 아래 인간대상 연구를 해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그렇지만 석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전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내 · 외의 학술지가 IRB 심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이를 대비하여 IRB 심의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석사학위 논문이라는 이유로 IRB 심의를 필수적으로 받지 않는다고 해도 연구과정 중 설문조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이 개인정보를 통해 특정한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익명화 처리와 데이터의 안전한 관리를 통해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CHAPTER 2

연구수행

Q. 12 ~ Q.17

012 Question

시중에 출판된 책자에서 신규 연구에 대한 아이디어를 착안하여 질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저자와의 연락이 불가한 경우, 연구수행이 가능한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창작적 표현에 한정되며 특정의 도서 등의 창작물에 내재되어 있는 아이디어나 사상 등은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본 사안과 같이 특정의 도서에서 기술된 내용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도서에서 기술된 문장 등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그 내용을 모티브로 한다는 점만으로 저작권 이용 허락을 얻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모티브로 삼는 것은 해당 도서에 내재된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것이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표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후속연구자가 저작권법의 보호가 미치는 부분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저작권자와 연락이 안 된다는 상황에서 법정허락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법정허락은 저작권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당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의하여 일정한 조건하에서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연구결과물에서 아이디어를 착용하여 후속 연구를 하는 과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원저작자의 저작물을 인용하고, 이후 후속 연구의 진행 단계에서 원저자에게 동의를 얻고, 논문에도 밝히는 방법이다.

둘째. 원저작자의 저작물에서 특별히 인용하거나 차용하려는 바가 없다면, 원저작자의 저작물과 별도로 일반화시키면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 즉 원저작자의 저작물이 후속연구자가 진행하고자 하는 바와 유사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저작자의 저작물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수준이라면 후속 연구가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저작자의 저작물과 후속연구를 기획하고 있는 연구자의 연구방향 간에 유사성이 없다면 크게 유념치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

원저작자에게 후속연구를 하고자 하는 연구자의 의도에 대해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 등이 더해진다면, 저작권 측면과 다른 측면(타인의 연구업적을 인정하고 공정하게 재사용 하는)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013 Question

공식 인문학 세미나에서 한 연구자가 독특한 아이디어 및 견해를 발표하였다. 이 세미나에 참여한 타인이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결과를 발표하였다.(맨처음 아이디어를 공유한 연구자는 연구를 진행하여 결과로 발표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 경우 현재의 연구윤리강령이나 지침 상에서 연구윤리 위반에 포함되는가?

교육부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에서도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연구성과를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경우 표절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술행사에서의 논문발표나 토론 및 좌담회, 워크숍 등에서 구두발표를 통해 얻게 된 타인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자신의 연구를 수행하여 발표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출처를 적절히 밝혀야 연구윤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때 타인의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이 공식적으로 출판되지 않아 그 아이디어의 소유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때에는 구두 발표를 함께 들은 사람들의 증언이나 녹음자료 등을 통해 해당 아이디어의 원 소유자를 확인할 수도 있다.

구두발표로 알게 된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출처표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정해진 일반적인 룰은 없지만, 예를 들자면 "이 연구는 00세미나에서 얻은 누구의 아이디어에 기반을 둔 것임"과 같이 자신의 연구에 기여한 타인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014 Question

학위논문 연구과정에서 설문지를 확보하였다. 박사논문에서는 설문지에서 확보한 4가지의 독립변수 중 1가지만을 사용하여 박사 논문을 제출하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위의 설문지에서 나머지 3가지 변수를 활용하여 학술지 논문의 출판이 가능한가?

1회의 설문지 조사를 통해 4개 변인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한 후, 1개 변인에 대해서는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나머지 3개의 변인에 대해서는 학술지 논문을 통해 발표하고자 할 때 문제가 없는가에 관한 사항이다.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왜 한 번의 설문 조사를 통해 4개의 변인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한 후, 이를 통합하여 발표하지 않고 각각 나누어 발표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정당화이다. 즉, 데이터 수집의 번거로움이나 어려움을 핑계로 여러 변인을 염두에 두고 데이터를 수집하여 변수 하나씩 분석하여 각각의 논문을 내려는 당초의 의도는 아니었는지를 숙고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독자의 입장이나 한 논문이 갖는 학술적 가치를 고려할 때, 데이터를 분리하여 발표하는 것이 하나로 합쳐 발표하는 것보다 정보의 종합성과 체계성이 떨어지게 된다면, 데이터의 분리(이른바 쪼개기 논문)는 정당화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첫 번째 고려사항에서 충분한 정당화가 가능하다면, 각각의 논문에서 활용한 변수가 다르니 당연히 데이터 내용이나 이에 대한 분석 및 논의 등도 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각각 별개의 논문으로의 출판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설문조사의 대상이나 방법, 기간 등은 동일할 것이며, 이에 대한 자료는 이미 박사학위 논문에서 처음 활용되었고, 이후의 학술지 논문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될 것이므로 먼저 사용된 데이터나 관련 내용에 대한 출처는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또한 박사학위 논문의 결과와 현 학술지 논문 간의 연계나 차이 등에 대해서도 언급되어야 한다면 동일한 샘플링에서의 다른 변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독자들이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015 Question

자신의 연구데이터를 같은 연구실에 근무하던 동료가 자신의 동의 없이 무단 복사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무단 복사한 동료는 해당 데이터를 도용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허락 없는 무단 복사는 연구윤리에 어긋나는 행위인가?

연구자료라 함은 연구자가 조사차원으로 수집한 타인의 자료와 연구과정에서 연구자 본인이 정리 또는 작성한 자료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 각각의 자료가 창작성 있는 편집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로 보호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전자에서의 경우에 더하여 연구자 본인의 자료가 창작성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무단으로 복제하였다면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무단으로 복사한 자료를 활용하여 마치 자신의 연구인 것처럼 발표하는 행위는 연구윤리위반으로서 표절에 해당 된다.

현재로서 연구윤리의 넓은 측면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임에 틀림 없지만, '연구부정행위'에 포함되는지 등에 관해서는 소속기관의 조사위원회 조사 및 판정에 의해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016 Question

A가 박사후과정 중 SCI급 논문을 출판하였고, 이때 공저자B, C, D가 등록 되었다. 이후 E가 A의 논문에 대한 생물학적 실험을 하여, A의 실험과정을 전부 포함하여 논문을 출판하였고 이때 공저자로 C, D를 등록하였다. 이때 참고문헌 등에는 A의 논문에 대한 언급이 없고, 논문의 상당수가 A의 논문을 포함하였으며, 연구방법 또한 대부분 일치하였다. 이때 D는 A와 E논문에서 교신저자였다. 연구윤리에 벗어나는가?

본 사례에서 먼저 출판된 논문을 '1번 논문' (교신저자 : D, 제1저자 : A, 공동저자 : B, C 혹은 공동저자 : A, B, C)이라 하고 이후 논문을 '2번 논문' (교신저자 : D, 제1저자 : E, 공동저자 : C)이라고 하면,

2번 논문은 이미 SCI급 학술지에 게재된 1번 논문의 연구방법을 포함하여 상당 부분을 활용하면서도 각주나(질문에는 각주 표기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으나, 참고문헌에 표기하지 않을 경우 각주에도 표기하지 않을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각주에 출처를 표기했으나 참고문헌에 누락시킨 경우, 의도적인지 실수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각주에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 의도적인 명백한 표절이라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참고문헌에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다면 중복게재 혹은 표절로 판정될 수 있다.

더욱이 1번 논문과 2번 논문의 교신저자 D가 동일인이기 때문에 이 두 논문 간에 유사한 내용이 출처표시 없이 사용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적다고 본다면, 2번 논문의 제1저자인 E에게 시정을 요구했어야 하는데도 하지 않았으므로 단순히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E가 D를 속이고 했든, D가 묵인하는 상태에서 했든, 이미 게재된 학술지의 연구방법과 상당한 내용을 적절하게 출처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의도성이 높은 중복게재 혹은 표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중복게재와 표절 여부 등의 구분을 위해서는 1번 논문과 2번 논문에 공동으로 참여한 교신저자 D가 정당한 재사용 동의를 1번 논문의 저자 모두에게 확보하였고,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고의성을 가지는지 등의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017 Question

표절검색 시스템에서 사전에 심사과정에서 취소한 논문과 신규로 작성한 논문과의 유사성이 확인되었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가?

논문 심사과정에서 투고자체를 취소하였거나, 논문 심사 결과 수정 후 재심사 대상으로 분류되어 저자가 논문을 수정하여 학술지에 투고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투고하였던 미출판 논문과 후속 투고 논문과의 유사성이 표절검색 시스템을 통해 확인될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의 문제이다.

유사도 검색을 위해 표절검색 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 이 논문이 표절검색 프로그램에 저장되어, 원래의 논문에서 수정된 논문을 투고하기 위해 유사도 검색을 하게 되면 비교 대상 논문이 데이터베이스에 남아있을 경우 당연히 유사성을 표시해 주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유사도가 나타났다고 하여 중복게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출판이 중단된 논문을 정식 연구결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저자가 이전에 쓴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어 있고, 이것이 표절검색 프로그램에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되어 있을 때, 신규로 작성한 논문과의 유사성이 확인되었고, 유사한 부분에 이전 게재된 논문에 대한 출처표시가 없을 때는 중복게재에 포함된다.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CHAPTER 3

연구성과 활용

Q. 18 ~ Q. 52

018 Question

박사과정 대학원생이 디자인 연구를 통해 학위논문을 작성하려고 한다. 이때 지도교수로부터 학술지 논문을 먼저 출판하도록 권유를 받고 있다. 지도교수는 교신저자를 원하고 있으나, 대학원생이 생각하기에는 중간 검토 및 코멘트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신저자를 부여할 경우 향후 자신이 단독으로 디자인출원 등을 할 때에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하고 있다. 논문에 저자권을 부여할 경우 후속 저작권에도 영향을 끼치는가?

논문 저자 자격과 저작물의 권한과 관련된 사례 중 하나이다.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그리고 많은 대학들의 연구윤리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부당한 논문저자란 실질적으로 저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주거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사례의 내용을 볼 때, 과연 지도교수가 교신저자로서의 역할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지만, 교신저자는 해당 논문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으면서 학술지의 편집자들과의 연락을 통해 논문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할 수 있어야만 한다.

논문 저자 표시에 대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연구 시작 전에 충분히 상의하여 저자의 역할을 나누고 이에 맞는 공로배분에 대해서 지도교수와 제자 혹은 또 다른 연구 참여자 간에 모두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해 지도교수와 충분히 의견을 나누어 결정해야 한다. 논문에서 저자권을 인정하였다고 무조건 후속 저작물에 대해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으나, 중요한 척도로 여겨질 수는 있다.

저작물 관련 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수행 및 결과물 발표 전에 논문과 후속 저작물 개발 과정에서의 참여여부 및 역할, 결과물의 소유 등에 대해서도 합의하여야 하며, 가능하다면 기록으로 남겨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019 Question

포스터 발표 당시의 교신저자를 후속 논문 출판 시에도 교신저자로 인정해야 하는가?

포스터 발표에서의 교신저자들이 후속 논문에서도 무조건 교신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포스터 발표 이후에 후속 논문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저자 간 기여한 역할이 다를 수 있고, 또 후속논문에서의 교신저자가 합의에 의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내용의 핵심은 각각의 논문에서 누가 교신저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 연구 논문이 나오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교신저자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다.

포스터 발표에서 기여한 저자들이 후속 논문에서는 저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후속 논문에 자신의 이름이 저자로서 올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또한 포스터 발표 내용과 후속 논문 간에 중요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 중요한 차이에 대한 역할을 다른 사람이 수행하여 그가 새로운 저자로 등록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포스터 발표에서 저자인 사람이 이를 바탕으로 한 후속 논문에서 반드시 동일하게 저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020 Question

A 기관에서 연구를 수행한 이후 타 기관으로 이직한 B 연구원이, A 기관에서 수행한 연구 보고서를 책자를 발행하면서 집필진에서 제외된 사실을 발견하였다. 연구원 B는 A기관에 저자권을 요구할 수 있는가?

본 사례의 핵심은 B 연구원이 A 기관에 근무할 때 수행한 연구 보고서에 저자권을 부여할 만한 기여를 하였는가에 있다.

B 연구원이 A 기관에서 수행한 연구에서 저자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실질적인 역할(연구 주제 선정 및 자료 수집, 분석과 해석, 보고서 작성 등)을 하였다면, 비록 퇴사를 하였다고 해도 그 보고서를 단행본으로 출간할 때 저자로 등록되어야 마땅하다.

추가로 확인해야 할 것은 해당 보고서를 출판하는 과정에서 저자변경 등에 대한 협의 진행 여부이다. 사전에 저자권을 가질만한 모든 저자들과의 협의 없이 저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의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연구윤리에 어긋나는 '부당한 저자권'으로서 중대한 연구부정행위이다.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가 연구성과를 인정받지 못하는 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A기관에서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조사하여 부당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021 Question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파트타임으로 이수하고 있는 데 이전에 총괄 연구 책임자로 참여한 연구과제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고자 한다. 가능한가?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연구보고서의 재사용, 재출판 등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다. 국가 또는 자체 연구기관의 연구결과 활용과 관련한 규정 및 협약 내용 등에서 사용가능한 과제여야 한다.

둘째. 저자권의 문제이다. 연구보고서의 내용 중에서 자신이 기여한 내용을 재사용하면서 인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실제로 기여하지 않은 내용을 학위논문에 인용 없이 사용한다면 이는 표절이나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저자권을 갖춘 상태에서 논문의 작성이 가능한 상태에서도 연구보고서의 대부분을 사용하였을 경우 신규 연구결과로서의 가치를 가지지 못할 경우 중복출판 및 자기표절에 포함될 수 있다. 반면에 연구보고서의 일부만을 인용하여 활용하고 추가 연구를 통하여 연구의 가치를 부여할 경우 학위논문으로의 작성이 가능하다.

최근 연구보고서의 논문 제출 시 중복출판의 문제로 인하여 검증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위의 상황과 관련한 지도교수의 조언 및 논문작성법에 관한 지도가 필요하다.

022 Question

A연구원은 다른 소속기관의 B연구원과 함께 공동연구를 통해 얻은 연구결과를 연구회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후 학술지에 논문으로 출판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공동연구원인 B의 업무변경으로 인하여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지 못하였다. 이후 B연구원의 업무를 승계한 C연구원이 해당 연구내용을 소속기관의 허락을 받아 보고서 형태로 C연구원의 이름만을 단독저자로 하여 인터넷상에 발표하였다. 만약 A연구원이 B연구원과 함께 공동 연구한 결과를 학술지에 논문으로 발표하는 경우 연구윤리에 문제가 되는가? 저자권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저자권(Authorship)으로 인한 표절의 발생 소지가 있는 사항이다.

만약 C연구원이 연구결과물을 자신의 것으로 둔갑하기 위한 고의성이 있다면 이는 표절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전에 A와 B가 먼저 연구회에서 발표한 결과물이 있고, 투고 전이긴 하지만 작성한 논문이 존재하므로 명확한 저자는 A와 B이고 C는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사실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보고서를 본 독자들이 A와 B가 발표한 연구회 논문 혹은 발표자료와의 유사성을 발견했을 때에는 C의 보고서에 대해 표절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A와 B가 연구를 수행한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는 C가 인터넷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표절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게 된다. 물론 C가 게재한 연구보고서를 정식 연구결과물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판단하기 쉽지 않지만, 독자로 하여금 오해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은 틀림이 없다.

따라서 만약 A와 B가 중단되었던 저널에 논문 투고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C가 인터넷에 올린 보고서를 먼저 바로잡아 저자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며, 모 연구회에 발표된 것을 보완하여 저널에 투고한 사실을 저널 편집자에게 고지해야 한다.(이 경우에도 후속 진행사항을 모든 저자가 협의하여 이견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A는 C가 인터넷에 올린 보고서로 인하여 원저자들이 겪게 될 표절이나 연구결과물의 침해와 관련하여 우려하기 전에 C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바로잡아야 본인의 연구결과물에 대해 저자권도 확보하면서 본래의 저자가 표절로 오해받는 문제도 예방할 수 있다.

023 Question

대학교수이면서 공공기관장을 겸하는 연구자가 공공기관 소속 연구원을 통해 논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자신은 논의 과정에서 논문 제목 등의 코멘트 외에는 관여하지 않은 채, 자신을 제1저자로 논문을 투고하였다. 다른 공동연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는가?

부당한 저자표시는 저자로서 실질적인 자격이 있는 사람을 저자에서 배제시키거나 저자로서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주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논문의 저자가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 학문 분야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나, 연구의 주제 설정과 실험 등 데이터 수집과 분석 및 해석, 논문에 대한 중요한 코멘트, 논문의 초고 집필과 이에 대한 리뷰 및 승인 등을 해야 저자의 자격이 주어진다. 사례의 내용상, 기관장은 논문 제목에 대한 코멘트 이외에는 실제로 논문 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며, 그럼에도 제1저자로 기재하는 것은 연구윤리에 어긋난다고 예상해볼 수 있다. 혹 이 연구를 위해 해당 기관장이 연구비를 수혜받는데 기여했으므로 자신이 제1저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바, 연구비 수혜에 도움을 준 사람의 경우, 제1저자가 아닌 감사의 글(acknowledgement)을 통해 그 고마움을 표시하면 된다.

만약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해당 학술지에서는 부당한 저자가 의심될 경우에는 자신들의 논문출판 관련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각 저자들이 어떠한 역할과 기여를 하였는지 등을 추가로 요구하여 부당한 저자표기로 인한 악영향은 없는지 파악해야 한다. 부당한 저자표기를 방치할 경우 정당한 연구업적을 가져야 하는 연구자가 피해를 당하게 되고, 묵인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학술지 나름대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학술지가 부당한 저자표기 논문의 출판에 관여하지 않을 경우, 연구부정행위로서의 부당한 저자표기 관련 이의제기나 제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024 Question

임상의학 연구논문에서 선물저자에 대한 부정행위 혐의가 의심된다. 부당한 저자표시(선물저자) 혐의의 입증과 관련하여 IRB 심의 신청서에 기입한 공동연구자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논문에서 공동저자로 등록되려면 반드시 IRB 신청서에 공동연구자로 등록되어있어야 하는가?

논문에 공동저자로 등록되기 위해서 IRB 신청서에 반드시 공동연구자로 기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기관별 IRB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보통 IRB 신청서 상에 참여 연구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본 사례와 같이 연구계획단계부터 본 연구에서의 역할과 참여 사실을 확인하는 용도로 참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연구수행 중에 연구계획이나 수행 방법의 변경 등에 의하여 참여진이 변경될 수 있을 뿐더러 변경된 연구에 따라 저자 또한 변경이 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연구 참여자의 역할 또는 저자권의 배분과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있다면 모든 저자의 동의를 얻고, 기록으로 변경사항을 남겨 오해의 소지를 예방해야 한다.

IRB에 제출된 연구계획서에 등록된 연구자라 하는 것은 관련 연구에 참여하였다는 간접 자료로 확인할 수는 있으나, 비록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저자권을 가질만한 기여를 하였다면 저자권을 가지는 데는 문제가 없어야 한다.

025 Question

생명윤리법 확대 시행 이전 논문 및 심의면제 대상 논문의 해외저널 출판과정 중 IRB 심의서를 요구하는 경우

생명윤리법의 확대 시행 이전이라도 해외 학술 저널에 논문을 싣고자 했다면 소속 대학 IRB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KAIRB와 같은 공용 IRB의 심의 진행 후 연구를 수행했어야 한다. 그러나 미처 IRB 심의를 받지 못했을 때는 당시 국내에서의 IRB 심의에 대한 기준이 미비하였다는 등의 소명을 해야 한다.

생명윤리법 확대 시행 이후에도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라도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해당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IRB 심의면제 대상이더라도 IRB 심의서를 요구하는 해외학회에 논문 투고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기관 외부의 공용 IRB에서라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사전에 심의를 진행한 경우에는, 해외 학술지에서 IRB 심의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때 쉽게 대응할 수 있으며 IRB 심의 문제로 인한 논문의 출판이 중단되는 문제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026 Question

박사학위 승인 이후 게재 예정인 학술논문이 심사과정 중인 사실을 학위논문에 표기해야 하는가?

박사학위 논문이 승인되었지만, 아직 최종 인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위논문에 바탕을 둔 논문을 작성하여 전문 학술지에 투고하여 심사 중일 때, 이를 박사학위 논문에 심사 중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하는지에 관한 사항이다.

박사학위 논문의 최종 인쇄와 학술지 논문의 출판 중 어느 것이 먼저일지 알 수가 없어 출처표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될 수 있다. 물론 학문 분야에 따라서는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미간행 출판물로 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학술지 논문에 박사학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동일한 데이터나 관련 내용이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에서 중복 사용되는 경우이므로 상호 언급을 해 줌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각각의 논문에서 마치 처음 사용되는 것처럼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027 Question

학위 논문 심사과정(예비심사와 본심사)에서 심사 대상 논문에서 표절이 발견된 경우 문제된 부분을 수정하고 논문 심사를 지속해야 하는가? 아니면 연구윤리위반에 해당하므로 심사를 종결하고 사후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대학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절차나 학위논문심사위원회의 조치는 사안의 경중과 대학의 자율성과 유관한 문제로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다만 전문연구자에 대한 심사가 아니라는 점은 감안되어야 한다. 논문심사 과정에서 지도교수나 심사위원은 타인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학위논문 제출자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논문을 수정해야 한다.

학위논문 제출자가 심사위원의 요구사항을 수정 정리하였다면 심사는 계속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수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심사위원들은 학위논문 통과를 거부할 수 있다. 예비심사나 본 심사 중에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논문심사를 종결하지는 않는다.

학위논문 심사과정은 학위논문 제출자가 쓴 논문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논문 제출자가 올바른 학위논문을 쓰도록 지도하고 또한 학위논문의 질적 수준을 높이도록 부족한 점을 도와주는 교육의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논문에서 데이터가 불충분하고 글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우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제출자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표절의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지도와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다.

028 Question

학술지에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의 저자들이 편집자와 동료 심사자들의 지적사항을 모두 수정하여 동일 학술지에 다시 투고한 경우 편집위원장 권한으로 게재 판정이 가능한가?

학술지의 편집자와 동료 심사자들은 주의 깊고 건설적인 지적을 통해 논문 저자들이 자신들의 연구를 개선하는 데에 커다란 도움을 준다. 즉 동료심사의 목적이 출판의 질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연구를 개선하여 학문을 발전시키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 논문의 저자들이 편집자와 동료 심사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수정을 하여 논문을 다시 투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 논문의 게재 여부에 대해서는 학술지마다 다른 기준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처음 투고된 논문과 마찬가지로 취급되어 적절한 동료심사자들을 통해 통상적인 심사를 진행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029 Question

심사가 완료된 학위논문을 학위수여식 이전에 학술지 논문으로 일부 수정하여, 출처를 밝히고 투고할 수 있는가? 또 게재가 될 경우 중복게재에 해당하는지? 중복부분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중복게재가 되는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학위논문을 활용하여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학위논문이 최종 인쇄되기 전에 이를 활용한 학술지 논문을 투고하면서 학위논문에 대하여 출처를 밝혔고,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학술지의 peer review나 편집인이 최종적으로 논문 게재를 승인했다면 중복게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전 저작물의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이후 저작물에서 활용하고자 할 때, 활용되는 부분에 대한 출처를 표시하고 이를 이후 저작물을 출판하는 관계자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030 Question

학술대회에서 구두 혹은 포스터로 발표하였고 초록집에 실린바 있는 연구내용을 추후에 학술지에 정규 논문으로 게재하는 경우 중복게재에 해당하는가?

학술대회에서 구두 또는 포스터로 발표 당시 제시하였던 자료와 그림은 추후에 본인의 학위논문이나 학술지 논문에 재사용할 수 있다. 또, 다른 학술대회에서 그 내용을 그대로 발표해도 문제시 하지 않는 것이 대다수 학문분야의 관행이다. 학술대회에서의 발표는 아직 검증받지 아니한 가설을 여러 분야의 동료들에게 보여주어 이의 타당성을 묻는 연구 활동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록은 하나의 완성된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학문분야와 학술지에 따라서는 학술대회에서 사전에 발표한 내용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논문 투고 시 해당 사실을 밝히고, 후속 논문에서는 인용 등을 통한 방법을 사용하여 중복사용 사실을 명백히 밝히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대다수의 학회에서는 학술대회 내용을 포함해서 학술논문으로 출판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연구성과의 2차출판 혹은 재사용과 관련한 지침이나 학계의 인식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후속 논문 발표시에는 해당 학술지의 출판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고 준수하는 것이 향후에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이다.

각종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포스터에 사용한 연구데이터를 후속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출처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사전에 발표한 연구결과를 정당한 재사용을 위한 절차에 해당하므로 ISSN의 발급여부와는 큰 상관이 없다)

031 Question

학위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출판하는 경우 저자권 인정, 심사위원의 저자 인정 여부, 자료를 수집한 공동연구원의 인정 등에 관한 기준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논문의 저자가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 학문 분야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해당 논문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이 논문의 저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학위논문의 경우, 학위논문의 저자인 학생과 이를 지도한 지도교수의 경우, 그 기여도가 많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 학위논문을 토대로 학술지 논문으로 전환할 경우, 그 내용이 거의 같을 경우 논문을 제출하는 학생이 제1저자, 지도교수가 공동저자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만일 학술지 논문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지도교수의 역할이 제1저자로서의 역할에 해당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제1저자가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학위 논문의 심사위원이 학술지 논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여를 했다면 그에 맞는 저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본다. 또한 학술지 논문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자료 수집에 도움을 준 사람의 경우도 그 역할이 단순히 설문조사에서 자료 수집을 돕는 것이 아니라 저자로서의 실질적 기여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저자의 자격을 주어야 할 것이다.

032 Question

설문지를 이용한 연구를 수행하였을 때 설문지는 한 번에 돌렸는데 설문을 응답한 대상자를 나누어 결과를 정리하여 따로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도 연구윤리에 어긋나는 것인가? 예를 들어 설문 결과를 이번에는 초등학생에 대한 결과, 다음에는 중학생에 대한 결과를 이런 식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논문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가?

본 사례와 관련된 연구윤리의 이슈는 중복게재와 자기표절이라고 볼 수 있다.

중복게재 자신이 이미 발표(게재)한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동일 또는 유사한 독자층을 상대로 선행 저작물의 출간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다시 발표(게재)하는 행위(비슷한 개념으로 혼용되고 있는 자기표절, 이중게재를 포함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기표절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상당 부분 또는 거의 대부분을 그대로 혹은 거의 유사하게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거나, 출처를 표시했지만, 이후의 저작물의 목적이나 논리 전개 등에 맞게 이전 저작물을 분석적으로 적절하게 활용(맥락에 맞게 재해석, 재구성, 비판적 해석 등)하지 않고 단순히 관련 내용을 가져다 붙여 놓아 내용의 질적 측면에서 독창성이나 학술적 가치 면에서 별로 기여도가 없는 경우

중복게재와 관련하여 같은 설문지를 바탕으로 했지만 대상이 다른 두 논문의 내용상 유사성이 적으면서 개별 논문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면 두 개의 논문이 중복게재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만약 후속 논문에서 일부 이전 논문의 언급이 필요한 경우 인용처리 해야 한다.

중복게재의 유형 중 쪼개기 출판(Salami publication)이 있는데, 이는 연구수행 후 하나의 저작물로 발표해야 할 내용을 고의성을 가지고 여러 논문으로 나눈 것을 의미하며 논문이 두 개로 나누었을 때보다 하나로 출판되었을 때 더 일관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다.

종합하여 보자면 만약 본 사례에서 같은 설문 항목을 두 개의 대상(초등학생, 중학생)에게서 확보하여 같은 연구 설계, 내용, 결론 등의 내용으로 개별적으로 논문을 작성한다면 개별 논문의 가치가 있을지가 중요하며, 고의로 굳이 분리하지 않아도 되는 논문을 분리하여 지나치게 유사한 내용으로 중복 작성되어진다면 중복게재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 이는 학문 분야별 기준이 다소 다른 점이 있으므로 후속 논문의 투고 시에 이전 논문을 언급하면서 관련 설문조사가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을 해당 학회에 안내하면 학회에서 논문 심사 시에 유사성 판별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두 논문간의 유사성은 배제하고 개별 논문으로서의 독창성을 인정받게 된다면 단순히 동일시기에 접수한 설문지만을 이유로 연구윤리에 위배되거나 중복게재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가장 정확한 것은 현재 우려가 되는 사항에 대해 학회에 알리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한다면 개별 논문으로의 분리 출판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033 Question

국내 대학원에서는 학위과정 중 출간된 학술지 논문을 종합하여 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는데, 이미 출판된 논문의 경우 해당 학회에 저작권이 귀속되므로 자신의 학위논문이라 하여도 정확한 출처표시 없이 데이터 및 문장을 사용했다면 해당 학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학위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재출판하거나 학술지 논문을 학위논문으로 재출판 하는 것은 국내와 국외 학계에서 대부분 허용되고 있다. (논문이 극히 드문 학문 분야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곳도 있다.) 이는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의 성격을 학계에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학위논문은 학생이 연구자로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학습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학술지 논문은 전문 연구자로서의 연구성과를 학계에 알려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성격이 더 강한 차이점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의 독자는 뚜렷하게 구분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논문의 선후 관계를 떠나 이 두 논문 간에는 중복게재의 요건들이 학술지 논문 간의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이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에는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간에는 중복게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과 달리 요즈음에는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간에 재출판을 허용할 지라도 논문 투고자가 논문의 출처와 인용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뚜렷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선행 논문을 출판하면서 해당 학술지 등에 저작권이 위임되는 것은 일정 부분 사실이다. 실제로 학위논문이나 학술지 논문 출판 시 동의서에 저작권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자신의 논문을 재사용하여 재출판, 이차출판 할 수 있는 것은 연구자의 권리로서 선행 논문을 출처로 하여 재출판 하는 사실을 밝히거나, 선행 논문을 인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한 저자로서의 권리는 저자가 지속적으로 가지게 된다.

또한 많은 대학에서 학위논문의 제출 이전에 학술지 논문을 필수적으로 출판하도록 하여 학생이 적극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고 연구역량을 높이도록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유들로 연구 결과를 학위논문에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단순하게 이전 연구결과를 중복하여 사용하려는 의미보다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고 인정받는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연구자가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간에 재출판을 한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 출처를 명백히 밝히고, 선행 및 후속 학술지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며, 논문의 재출판 후에는 연구자로서의 연구 성과를 중복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학술지 논문과 학위논문의 차이점을 학계에서 인정하고 두 논문간의 재사용이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허용되는 출판형태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학술지 논문과 학위논문 간 재사용 과정에서 출처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중복게재라고 할 수는 없다. 반면에 고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출처표기 없이 재사용하는 중복게재의 경우 학술지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정될 수도 있을 것이나, 사안의 특성 및 저작권 소송 결과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문제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참조.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 지침'(2010)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 지침

6. 표절 및 중복게재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

2) 다음에 해당하는 유형은 중복게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독자군을 위해 일차와 이차 출판 학술지 편집인 양자의 동의를 받아 출처를 밝히고 게재한 경우

② 연구자가 자신의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논리와 이론 등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는 연구과정(국내 · 외 학술대회에서 발표 후 출판된 논문 및 자료의 경우 포함)에서 적절한 출처 표시를 한 후속 저작물

③ 이미 발표된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을 모아서 출처를 표시하여 저서로 출판하는 경우

④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의 내용을 연구업적에는 해당하지 않는 출판물에 쉽게 풀어 쓴 경우

⑤ 기타 관련 학계 또는 동일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 중복게재가 아닌 것으로 현저하게 평가되고 있는 경우

3) 각 기관은 1) 및 2)에 해당되는 사항이더라도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하여 표절 및 중복게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034 Question

연구원 본인이 작성하여 발간한 연구보고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투고한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경우 학술지 논문으로 투고하여 출판할 수 있는가?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작성한 연구보고서의 학술지 출판과 관련한 사항이다.

중복게재와 관련한 가이드는,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연구윤리 지침 제5조 2항과 6조 2항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살펴보면 중복게재를 피하려면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독자군을 위해 일차와 이차 출판 학술지 편집인 양자의 동의를 받아 출처를 밝히고 게재한 경우' 라고 기술하고 있다.

기관 내 연구보고서와 학술지의 독자는 일부 겹치기는 하겠지만 구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연구보고서의 경우 제한적 독자군으로 인하여 정식 연구성과로 인식하지 않는 학문분야도 있음) 따라서 소속기관으로부터 동의를 확보한 이후, 연구보고서를 출처로 표기하고 논문을 투고하고, 학술지의 정상적인 심사과정을 거쳐 출판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연구보고서의 논문 출판을 위해서는, 기관 내 연구보고서의 외부 출판이 가능한지, 출판에 따른 절차는 무엇이 있는지 등을 소속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소속을 가진 연구자의 연구업적 (연구보고서)은 소속기관에 귀속되기 때문에 소속기관으로부터 연구성과의 외부 출판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출판 관련 허가를 확보하여야 한다. 논문의 투고 시에는 해당 학술지에 어떠한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논문으로 투고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 논문의 심사 시 관련 내용을 학회에서 숙지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기관에서의 연구보고서의 외부 재출판 관련 가이드가 없다면, 연구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지침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연구성과의 개별 인정 기준 등도 제정하여 연구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연구결과를 가지고 복수의 연구성과가 생긴 경우에는, 보다 이득이 되는 연구성과를 선택하여 사용하거나, 복수의 연구성과 모두를 기록하여야 할 때에는 연구의 선후 관계나 중복출판, 2차출판 정보를 함께 표기함으로써 연구성과가 중복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035 Question

학술대회에서 포스터로 발표한 연구내용을 심화, 확장하여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하고자 하는데 두 제목이 같을 경우 이중게재나 중복게재에 해당되는가?

포스터와 논문은 연구성과의 발표과정이라는 의미는 동일하지만 분량에 따라서 연구성과를 전달하고자 하는 방식이나 온전함 등에서 차이가 있다. 포스터 보다는 논문에서 더 완성된 연구결과를 포함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살펴보면 포스터 발표가 선행되고, 출처를 밝힌 후 정식 논문으로의 형태를 갖추고 학술지 논문으로 완성하여 출판한 경우가 많다. 이는 포스터 논문을 기반으로 하여 심화시키고, 미처 담지 못한 연구성과를 더해가는 정상적인 연구의 심화 과정으로서 권장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중게재나 중복게재와는 뚜렷하게 구분된다.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ICMJE)의 '생명의학분야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 양식'이라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복 또는 이중게재의 부분에서 '전문 학회에서 초록 또는 포스트 발표 등 예비보고한 결과를 완성시킨 논문은 중복 또는 이중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표기하고 있다. 이때 학회 초록집 등에 자세한 자료, 도표, 표, 사진 등이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긴 하다. 다만 포스터 발표에서 연구데이터의 핵심자료를 포함 시킨 이후, 출처표기 없이 논문으로 작성하여 투고 하였다고 한다면 연구데이터에서의 중복게재의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투고자는 후속논문에서 포스터 발표 사실을 밝히고, 해당 학술지에 투고하면서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를 한바 있다고 밝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를 밟음으로 인하여 첫째, 투고자는 자신의 연구결과를 정당히 재사용 하였고 (인용) 둘째, 해당 학회에 출처를 밝힘으로써 (인용 및 사전 연구결과물 존재 안내) 연구데이터를 고의로 중복사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으며, 정상적인 연구의 심화 및 체계화의 의도로 후속 논문을 작성하였음을 알리게 된다.

단순히 제목이 같음으로 인하여 이중게재나 중복게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출처를 밝히고 있는 중복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나 문구 등은 올바르게 인용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논문에서의 제목은 포스터 발표 이후 논문으로의 발표 시 심화 또는 또 다른 연구결과를 포함시킬 경우에는 연구내용에 더욱 적합하게 일부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이다.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 지침

6. 표절 및 중복게재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

2) 다음에 해당하는 유형은 중복게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독자군을 위해 일차와 이차 출판 학술지 편집인 양자의 동의를 받아 출처를 밝히고 게재한 경우

② 연구자가 자신의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논리와 이론 등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는 연구과정(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발표 후 출판된 논문 및 자료의 경우 포함)에서 적절한 출처 표시를 한 후속 저작물

③ 이미 발표된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을 모아서 출처를 표시하여 저서로 출판하는 경우

④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의 내용을 연구업적에는 해당하지 않는 출판물에 쉽게 풀어 쓴 경우

⑤ 기타 관련 학계 또는 동일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 중복게재가 아닌 것으로 현저하게 평가되고 있는 경우

3) 각 기관은 1) 및 2)에 해당되는 사항이더라도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하여 표절 및 중복게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036 Question

이미 학술대회에서 포스터로 논문을 발표 하였으나 새로운 분석법을 적용하여 내용을 수정한 후 같은 제목으로 학술지에 논문으로 투고하려고 한다. 포스터에서는 공저자로 등재되었으나 자료 수집, 분석, 내용 정리 및 결론, 제언 등 모든 과정의 대부분을 주도하였다. 포스터의 교신저자는 해당 내용을 학술지에 논문으로 투고할 의사가 없다. 이때 포스터의 교신저자를 제외하고 학술지 논문의 교신저자로 논문을 투고 할 수 있는가?

이 경우 우선적으로 포스터 논문의 교신저자와 저자권에 관련한 공식적인 확인절차가 필요하다. 기존 공동저자의 주도하에 새로운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단독 투고자 하는 의사를 기존 교신저자 및 모든 저자에게 전달하고 단독 투고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면, 단독으로 논문을 투고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교신저자는 대부분 지도교수이거나 연구책임자의 비율이 높기 마련이다. 뿐만 아니라 포스터 발표 시에 교신저자로서 등록이 된 이후 후속 논문의 수행 및 투고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기존 연구에 참여한 모든 저자에게 의사를 전달하고 동의를 확보하고 기록으로 남겨 명확히 하여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저자권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저자권 이슈는 연구과정에 참여한 이해관계자 간에 생기기 마련이므로 상당히 예측하기도 힘들뿐 아니라 해명 및 규명 등이 어려우며, 학생이나 참여 연구원에게 특히 곤란한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후속 논문의 작성 방향과 저자권 관련 사전 동의를 얻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구두 동의만을 믿고 진행하였을 경우, 향후에 당사자의 입장이 바뀔 경우 저자권 협의 과정을 설명하기 쉽지 않다.

후속 논문의 투고할 때에는 해당 학회에 후속 논문이 포스터 발표에서 사용한 연구데이터를 포함하거 있다거나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안내하여야 하며, 논문에서 포스터 발표와 중복되는 부분의 경우 인용을 하거나 참고문헌의 기재 및 출처 코멘트 등과 관련한 조치를 해당 학회와 의논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037 Question

A연구소는 외부 기관 소속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수집한 연구결과보고서를 모아서 논문집으로 발간하였고 이 논문집은 ISBN 번호를 부여받았다. 한편 A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 외부 연구용역에 참여한 연구자가 당시 연구결과보고서를 축약하여 연구방향이나 접근방법이 동일하고 내용도 거의 같은 논문으로 발표하였다. 이 경우 중복게재에 해당하는가?

제출된 연구용역보고서를 묶어서 학술서적으로 만들고 이에 ISBN 번호를 부여하거나 인터넷 공간에 등재해 공개하면 이것은 하나의 저작물이 된다. 따라서 추후에 이 저작물을 보강하여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한다면 '이전에 발표된 적이 없는 새로운 내용을 발표'하는 약속을 어기는 것이 된다. 따라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가 논문집으로 출판하는 경우는 해당 연구자가 인지하고 동의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저서로 출판된 연구보고서를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저자는 논문을 투고하는 과정에서 연구용역을 시행한 기관에 학술지 논문의 출판과 관련한 동의를 확보하여야 한다. 연구용역의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연구성과가 이전될 수도 있고 외부 출판 시 동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의를 확보한 이후에는 학술지 편집인에게 선행 연구결과가 연구결과보고서로 출판된 바 있다는 정보를 충분히 밝히고 논문에 이 사실을 표기하여 본 논문에 대한 학술지 게재 여부를 학술지 편집인이 판단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038 Question

국내 학술지에 실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의 경향을 분석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후 실험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치해석 모델링을 통한 검증과 새로운 분석방법을 통하여 완성도 높은 결론을 도출한 논문을 외국 저널에 게재하였다. 외국저널에는 이미 출판된 바 있는 국문 논문의 실험데이터를 활용한 바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는 않았다. 2개의 논문은 당연히 같은 실험에서 시작된 논문이므로 실험과 관련된 내용(시험체 설명, 실험방법, 실험데이터)은 유사하나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 상이하며 서론, 배경 및 목적, 연구방법, 결론이 모두 뚜렷한 차이가 있다. 이 경우 후속 외국 저널 논문은 중복게재에 해당하는가?

중복게재 혹은 자기표절에 대한 판단 기준은 학문 분야나 학술지 마다 다소의 편차가 있다. 각 학술지마다 투고 및 출판 policy를 갖고 있으며, 여기서 중복게재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사항은 투고 논문에 이미 발표(게재)된 자신의 자료나 데이터를 사용하였을 때는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여야 하며, 중복게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모호하다고 생각할 때는 투고할 때부터 관련된 선행 연구물을 투고 논문과 함께 해당 학술지의 편집인에게 알려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 상이하고 서론, 배경 및 목적, 연구방법, 결론이 모두 뚜렷한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이미 국내에서 발행된 학술지에 동일한 실험 데이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출처표시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본 사안은 요즘 국내 학계에서 논란이 되고 비난의 여지가 많은 의도적인 중복게재 혹은 이중게재와는 차이가 있다. 논문 저자는 해당 학술지의 투고 규정이나 출판 규정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관련 사항을 의도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중복게재에 대한 판단여부는 전적으로 해당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하므로 논문을 게재한 외국 학술지 편집인에게 연락하여 중복 사용한 데이터에 대한 출처 표시가 누락된 점을 밝히고 논문 수정(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철회)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하다.

039 Question

연구자가 학위 과정 중에 얻은 연구결과를 학술지에 논문으로 게재하였다. 이미 사전 게재한 논문의 내용을 본인의 학위논문의 일부로 포함시켜 최종적인 연구결론을 도출한 경우, 해당 학위논문을 자기표절이라고 판단하여 학위논문 자체를 인준하지 않을 사유가 되는가? 이때 사전 게재한 학술지의 논문내용을 본인의 학위논문에 포함시켰으나 참고문헌에 해당사실을 표기하지 않았다.

학위논문은 학생이 전문연구자로 성장하기 위한 학습의 단계로서 전문 연구자가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학술지 논문과는 성격이 다르며, 논문의 독자군 또한 구별되어 있다. 학위논문의 작성을 지도하고 심사하는 지도교수와 심사자에게는 연구성과의 평가와 함께 올바른 학습과 연구성과의 집필 즉 논문작성에 대한 지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내 인문사회계와 이공계 분야에서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간의 재출판 또는 연구결과의 재사용에 대해서는 중복게재 혹은 자기표절이라 판단하지 않는다. 하지만 학위논문과 학술지간 논문이 무조건적인 재출판 또는 인용 없는 무단사용을 허용하자는 의미는 아니며, 논문의 선행 출판관계를 후속 논문에 반드시 명확하게 밝히고 인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위논문 심사 중 위의 사안을 자기표절이라고 판단하여 학위논문자체를 인준하지 않는 것 보다는 제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올바른 인용방법을 조언 하는 등의 지도의견 (논문 수정의견) 등을 학위논문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040 Question

유사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모여 자신들이 출판한 학술지 논문을 묶어 출처를 표기하고 국내 출판사(유료)를 통하여 출판할 계획이다. 연구윤리 및 저작권 차원 문제의 소지가 있는가?

연구윤리 및 저작권 차원에서 문제가 없으려면 학회의 동의가 필요하며 사전 학술지 논문의 출판 정보를 꼭 기입하여야 두 가지 차원에서 모두 문제가 없을 것이다.

먼저 연구윤리 차원에서 살펴보자. 다수의 연구자가 사전에 출판된 학술지 논문을 묶어 독자를 위하는 목적이거나 기념의 목적으로 재출판 하는 경우는 간혹 있으나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정이 있다.

첫째, 싣고자 하는 논문의 출판 학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둘째, 신규 책자에 실릴 논문의 사전 출판정보와 재출판의 목적을 밝히고
셋째, 출판 이후 각 저자들은 연구 성과물의 중복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논문 출판과 책자 발행까지의 인과관계를 모두 기입하거나, 두 가지 결과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위의 사항들은 중복게재 및 연구결과의 중복사용을 피하여 정상적인 2차출판을 위한 과정이다. 신규 책자의 내용이 저자들의 이전 연구결과를 활용하였지만 독자에게 유의미한 목적으로 재출판된 것으로써, 저자들은 연구결과의 중복사용의 목적이 없음을 밝히는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다음으로 저작권 차원이다. 해당 학회를 비롯하여 대다수의 학회에서는 논문의 출판 이후 해당 학회나 학술지에 저작권이 전부 또는 일부 귀속됨을 안내하고 있다. 만약 연구자에게 동의를 확보하는 절차가 없었다고 하여도 해당 논문의 투고 전에 해당 학회지 규정의 숙지 의미 등이 있다면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것에 큰 무리는 없다. 물론 각 저자들에게도 논문의 이용과 관련한 권리가 있으나 전문을 활용한 2차출판의 경우 연구윤리와도 유관한 부분이기도 하여 해당 학회의 동의를 얻는 과정과 선 출판 정보의 기입이 꼭 필요하다. 따라서 출판에 앞서 책자발행의 의미와 관련사항을 학회에 전달하고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참고 1. 학술단체총연합회 연구윤리 지침 해설서 (6조)
2. 연구자를 위한 저작권 매뉴얼 (P. 28~)

041 Question

사회과학연구에서 연구모형을 수립하여 한국과 미국데이터로 결과를 분리하여 각각 한국과 미국에 발표할 경우 자기표절에 포함되는가?

단순히 언어를 달리하여 유사한 내용을 중복으로 출판하거나 자신의 연구결과를 재사용 하는 방법을 소홀히 하였을 경우에는 중복게재에 포함될 수 있다.

본 사례의 경우, 두 개의 논문이 모두 별개의 연구논문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도록 출판해야 중복게재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국내 및 국외 논문의 구별과 무관하게 유사한 내용으로 작성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후속논문에서 선행논문을 참고문헌 및 인용 등의 방법으로 출처를 밝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042 Question

A와 B라는 실험데이터를 각각 다른 저널에 출판을 한 이후, A와 B의 연계성을 주제로 하는 신규 연구주제를 착안하였다. A와 B 내용을 연계한 신규논문의 출판이 중복게재에 해당하는가?

A와 B 각각의 학술지 저널의 실험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연구 결과로서의 가치를 가진 C논문을 출판하는 과정에서의 중복게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C라는 신규 논문의 출판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중복게재 문제의 소지를 예방하고 신규논문이 새로운 연구결과로서의 가치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

첫째. A와 B의 논문에서 C논문에서 재 수록되는 내용과 데이터는 인용처리 해야 하며 논문의 제출 시 해당 학회에 C논문의 배경(A, B의 출판기록)과 연구의 목적(가치)을 충분히 알려야 한다.

둘째. 위의 과정을 통하여 이전 연구결과물의 정당한 사용을 하였다 하더라도 정작 새로운 연구결과가 부족하면서 A와 B의 지나친 재사용이 있다면 이 또한 연구논문의 가치를 잃게 됨으로써 중복게재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C논문이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A, B 논문의 지나친 재사용과 유사성을 제거하고, 신규 연구성과로서의 독창성을 지닐 수 있도록 논문을 구성하고 작성해야 한다.

043 Question

대학원생이 이전에 참여한 연구용역과제의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학위 논문을 작성하였는데 연구보고서에 대한 인용이 없었다. 이 경우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가? 인용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가?

우선, 해당 용역과제의 주관 기관에서 연구결과물의 재출판 또는 사용을 허락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국가 또는 자체 연구기관의 연구결과 활용과 관련한 협약 내용에서 사용가능할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본인의 소속 대학에서 외부 연구과제 보고서 또는 학회지 논문의 석사 학위 제출 시의 규정 또는 안내사항 등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부 대학에서는 학위논문 제출과 함께 해당 논문의 내용이 이전에 외부 학술지 등에 출판되었는지 등을 고지하게 하고 있는 곳도 있다.

셋째, 저자권의 문제이다. 본인이 참여한 해당 용역과제에서 단독으로 참여하였는지, 아니면 연구책임자도 존재하며 또 다른 참여자도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본인 외에 다른 연구책임자나 연구자가 함께 수행하였다면 이전 연구결과물의 재활용 또는 학위 논문의 투고에 앞서 저자들 간에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연구보고서의 내용 중에서 자신이 기여한 내용을 재사용하면서 인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실제로 기여하지 않은 내용을 학위논문에 인용 없이 사용하였다면 이는 표절에 해당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연구보고서의 대부분을 사용하였을 경우 신규 연구결과로서의 가치를 가지지 못할 경우 중복출판 및 자기표절에 해당할 수도 있다. 연구보고서를 일부만 인용하여 활용하고 추가 연구를 통하여 연구의 가치를 부여할 경우 학위논문으로의 작성이 가능할 수 있다. 최근 연구보고서의 논문 제출 시 중복출판의 문제로 인하여 검증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위의 상황과 관련하여 지도교수와의 논의가 필요하다.

044 Question

학위과정 중에 얻은 자신의 연구결과 일부가 학술지 논문에 게재되었고 당사자는 공동저자로 등재되었다. 공저자로 참여한 논문에서 자신이 기여한 부분을 발췌하여 수정 보완하고 출판된 논문의 출처로 밝히고 또한 이미 출판된 학술지 논문 저자들의 동의를 얻는다면 학위 논문에 재사용할 수 있는가?

근래 적지 않은 이공계 학과에서는 박사학위 청구 자격으로 학술지 발표 실적을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학위연구내용의 일부를 학술지에 먼저 발표하고 나중에 학위논문 작성 시, 학술지에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본인의 연구내용(데이터와 텍스트 모두)을 이렇게 학위논문과 학술지논문에 이중으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대부분 나라의 이공계 학문 분야에서 허용되는 관행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때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바탕으로 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내용이 학술지에 게재된 사실을 밝히고 인용을 하여야 한다.

또한 이때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일이 있다. 예를 들어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저자로 참여하여 발표한 공동 학술논문의 한 저자인 학생이 그 논문의 내용을 그대로 자신의 학위논문에 활용하는 것은 표절과 저작권 위반의 시비를 야기한다. 다른 사람이 생산한 데이터와 텍스트가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그 부분을 자신의 학위논문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글과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이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이는 저작권 위반이 된다. 설사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표절과 데이터 표절의 부정을 행하는 것이다. 굳이 다른 사람의 데이터를 언급하여야 한다면, 이를 글로 소개하면서 인용을 해 주어야 한다. 사전에 발표된 연구결과물을 바탕으로 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사전에 지도교수와의 의논을 통하여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045 Question

모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가 국내학술지에 영문으로 출판한 논문을 몇 년 후 해외의 학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외국학술지에 동일한 내용의 영문 논문으로 다시 게재하면서 선행 논문인 국내 학술지에 대한 출처표기를 하지 않았고 또한 국내학술지 편집인에게 동일한 연구 내용의 후속 출판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논란이 일자 저자는 국내 학술지에 발행된 선행논문을 취소하였다. 이런 경우 저자의 연구 윤리 위반에 대하여 연구자의 소속 기관은 어떤 사후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선행논문을 삭제했다면 후행논문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

이는 명백한 동종 언어간의 이중게재이다.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이중게재로 판단을 했다면, 두 논문이 발표된 학술지에 통보하고, 그 학술지에서 논문 철회 혹은 수정 조치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는 연구자가 논문을 철회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046 Question

공동연구를 통해 도출된 공동데이터를 가지고 연구 흐름과 연구의 방향이 다른 두 논문의 출판이 가능한가?

데이터의 중복을 허용하는 분야도 있다. 케이스가 희귀하거나 특이한 경우가 적지 않은 의학 분야가 여기에 포함된다.

만약 연구자 본인이 참여해서 얻어진 공동데이터를 이용하여 표나 그림 등으로 논문에 사용하여 출간된 이후에 동일 공동데이터를 논문에 재사용하고자 한다면 해당 데이터가 사용된 논문의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데이터의 표절 또는 중복사용 문제 예방)

추가로 유의하여야 할 점은 연구흐름과 연구의 방향이 동일한 공동데이터를 통한 것이어야 할 만큼 후속 논문이 개별 논문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가의 문제이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자신이 기여한 부분의 연구데이터만을 사용하여 논문을 작성하여야 하며 복수의 연구자가 참여하여 얻은 연구데이터일 경우에는 데이터의 재사용에 앞서 참여 연구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047 Question

한 연구자가 자신의 후속 논문에서 선행 논문에서의 이론적 배경이나, 연구방법론을 일부 문장이나 단락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재사용한 경우 연구부정행위에 포함되는지?

이론적 배경이나, 연구방법론과 관련한 내용의 일부가 겹치는 부분이 연구의 핵심적인 부분인 아닌 연구방법론에 대한 기술로 제한되어진 경우에는 고의적인 자기표절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바람직한 것은 이론적 배경이나, 연구방법론 또한 가능하다면 해당 논문에 적절하게 재구성 하는 것이 좋으며, 자신의 선행 연구결과 정보를 소개하거나 인용법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자신의 연구결과 사용과 관련한 부분은 연구윤리 관련 지침 등에도 수록되어 있으므로 무단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참조.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4)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정 2014. 3. 24. 교육부 훈령 제60호

제7조(자신의 연구결과 사용)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연구논문 등 작성 시 이전에 발표하지 않은 자신의 연구결과를 사용
2.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게 · 출간하여 본인의 연구결과 또는 성과 · 업적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금지
3.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용사실을 표시하거나, 처음 게재한 학술지 등의 편집자 또는 발행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

048 Question

공공기관 소속 연구원이 연구보고서를 수정·보완하여 학술논문으로 출판하는 경우 중복게재에 해당하는지? 출처를 밝힐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지?

논문 투고 전에 연구과제의 시행기관으로부터 논문의 출판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

연구보고서나 사업보고서의 일부를 수정 · 보완하여 투고할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과제의 수행 및 연구성과의 재출판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구결과의 활용(논문 투고 등)이 가능한 사업인지, 이때에 사사표기 등을 포함해야 하는지, 결과물을 활용하였을 때 연구 사업결과의 보고 시 또는 보고 후에도 관련 정보를 기입해야 하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런 가이드라인은 협약서나 연구관리 규정 등에 포함되어 있으며, 연구관리 및 연구주관기관에 확인하면 된다. 자체연구의 경우 소속기관의 연구성과 외부출판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및 심의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다른 측면으로는 저자권과 관련한 문제이다. 국가 R&D 사업의 경우 분명히 공동연구자나 참여연구원 그리고 협력기관 등이 포함 될 수 있다. 공동연구의 연구결과물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공로배분(저자권 등)을 후속 논문 출판과정에서 참여 연구원으로부터 동의를 확보하여야 하며, 타인의 연구성과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논문 투고 시에는 연구의 수행 및 출판 관련 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의 사항들을 모두 해당 학회 등에 고지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 없이 사전에 수행된 연구보고서를 아무런 고지나 인용 없이 논문으로 투고 하실 경우에는 자기표절 등의 중복게재의 의혹과 표절 등의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049 Question

질적 연구를 완성하고 보니 양이 상당히 많아져서 두 편으로 분리하려고 한다. 그러면 연구제목, 연구목적, 이론적 배경, 선행연구, 연구내용, 결론은 다르지만,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등은 동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경우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가?

논문의 내용과 특성상 논문을 분리하여 작성하는 것만으로 연구부정행위라 판단 할 수 없다.

후속 논문을 발표하면서 선행논문의 내용 중 일부가 중복되거나 언급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를 인용법 등으로 처리하고 독자에게 후속논문의 성격을 명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투고할 학술지에 관련 사항을 충분히 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투고자의 충분한 설명 없이 논문심사가 진행된다면 유사 논문과의 중복성 · 유사성 구별이나 신규 논문으로서의 가치를 판단하기에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후속논문에서 논문의 성격에 대한 언급이나 인용 없이 선행 논문과의 차이점이 없는 중복된 내용 등이 지나치게 나타난다면 신규논문의 질적 가치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고, 논문 쪼개기나 부풀리기, 자기표절 등과 같은 중복게재 의혹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유의하여야 한다.

050 Question

학위 논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술지에 논문으로 발표하는 경우 자기표절에 해당하는가?

학생이 학위과정 중에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학위논문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워 많이 읽혀지는 편은 아니다. 그러나 학위과정에서 생산된 정보는 학술지 투고과정의 peer review의 절차를 거쳐서 보다 정제되고 보강이 이루어진 후, 학계의 학자들에게 전파되어 그 중요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끔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위논문을 학술지논문으로 발표하는 행위는 매우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반드시 후속 학술지 논문에 선행 연구결과물인 학위 논문의 출처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일부 분야는 이런 경우 본 논문은 OOO의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명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학술지에 논문으로 투고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학술지의 출판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여야 자기표절의 시비를 피할 수 있다.

051 Question

중복게재와 자기표절의 정의와 차이점은 무엇인가?

중복게재(redundant publication)와 자기표절(self-plagiarism)에 관한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쉽지 않다.

연구윤리 전문가의 견해에 따라 어떤 이는 자기표절의 한 유형으로 중복게재를 분류하기도 하며, 어떤 이는 거의 같은 것으로 보기도 하며, 자기표절이라는 개념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공존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두 용어는 "자신의 이전 저작물의 일부나 상당 부분을 이후의 자신의 저작물에서 활용할 때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사용함으로써 이후의 저작물에서 마치 처음 사용하는 것처럼 독자를 혼란케 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출처를 밝히지 않고 부당한 업적 인정을 받기 위해 활용하는 중복게재와 자기표절은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권 침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렇지만 학문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한 심화 확대된 연구가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전 연구 성과를 출처를 정확히 밝히고 이후의 저작물에서 활용하는 것은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참조. 〈국내 · 외의 여러 기관에서 중복게재 규정〉

기관	중복게재에 대한 정의
서울대학교	연구자는 이미 게재 · 출간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 · 출간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구 데이터나 문장이 일부 다르더라도 전체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한국학술단체 총연합회	연구자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처음 게재한 학술지 편집자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또는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다른 학술지나 저작물에 사용하는 행위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ICMJE)	이미 인쇄 또는 전자 출판된 논문과 상당 부분(considerable parts) 중첩된(overlap) 논문을 출판하는 경우

052 Question

국내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외국어로 다시 작성하여 해외학술지에 투고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기 발표된 논문이며 이를 수정하여 다시 투고함]을 명시할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가?

본 사항은 1차와 2차로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출판 관련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논문을 번역하여 재출판 할 경우 선행 논문을 출판된 학술지의 재출판 가이드를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재출판 가이드가 없을 지라도 선행논문이 출판된 학술지에 재출판 의사와 취지를 밝혀 동의를 확보한 상태여야 한다.

후속 논문을 투고할 때에는 사전 출판정보를 밝히고 동의를 확보하였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해외 학술지에서 모든 정보를 인지한 상태에서도 게재가능으로 판정한다면 양 학술지의 동의를 얻은 재출판이 가능할 것이며. 논문의 재출판시에도 독자의 혼동을 막기 위해서 위의 코멘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참조.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연구윤리 지침'(2010) (제6조)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 지침

6. 표절 및 중복게재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

2) 다음에 해당하는 유형은 중복게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독자군을 위해 일차와 이차 출판 학술지 편집인 양자의 동의를 받아 출처를 밝히고 게재한 경우**

② 연구자가 자신의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논리와 이론 등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는 연구과정(국내 · 외 학술대회에서 발표 후 출판된 논문 및 자료의 경우 포함)에서 적절한 출처 표시를 한 후속 저작물

③ 이미 발표된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을 모아서 출처를 표시하여 저서로 출판하는 경우

④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의 내용을 연구업적에는 해당하지 않는 출판물에 쉽게 풀어 쓴 경우

⑤ 기타 관련 학계 또는 동일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 중복게재가 아닌 것으로 현저하게 평가되고 있는 경우

3) 각 기관은 1) 및 2)에 해당되는 사항이더라도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하여 표절 및 중복게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CHAPTER 4

연구공동체

Q. 53 ~ Q. 64

053 Question

동료 대학원생이 학위논문 작성 과정에서 허위로 실험결과를 만드는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목격하였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모든 연구과정행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적 가치들을 연구윤리라 하고, 연구자가 해서는 안되는 부정한 행동들을 연구부정행위라고 정의한다. 목격한 행위는 연구부정행위 중 위조 및 변조에 해당할 수 있다.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은 위조, 일부 데이터를 골라내거나 값을 변형시키는 등의 행위를 변조라고 정의하고 있다.

동료 연구자의 부정한 연구행위에 대해 직접 동료연구자에게 문제를 제기하여 시정을 하게 하거나 혹은 지도교수에게 제보를 통하여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건전한 이의제기를 하는 사람을 제보자(whistle blower) 혹은 내부고발자 라고 한다. 비록 국내에서는 내부고발자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제보자가 어려움을 겪는 등의 사례가 확인된바 있지만, 동료연구자에 대한 처벌이 아닌 해당 부정행위의 개선 등이 목적이라면, 서면을 통한 무기명 제보 등을 고려할 수도 있다.

물론 대학 내 연구진실성위원회 또는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처에 해당 사실을 정식으로 제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연구부정행위와 관련한 제보나 이의제기 등은 해당 연구부정행위 의혹 사건을 예방하거나 해결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해당 대학원생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인 것이다.

054 Question

민간 산업체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과제책임자의 자녀가 해당 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연구윤리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어떤 내용이 그 근거가 될 수 있는가?

민간 산업체로부터 위탁받은 과제에서 연구책임자의 가족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문제는 일반적인 연구윤리 지침의 적용 범위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문제이다.

학교 자체나 위탁 산업체에서 권장하고 있는 연구과제 수행가이드 (인력구성 등)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직계 가족을 연구원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거나, 연구에 참여시킬 경우 유의사항 등이 관련 가이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해당 자녀가 실제로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급여 등을 부정하게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연구비 사용 관련 지침의 적용이 가능하다.

물론 규정 등에 제약사항이 없고, 실제로 과제책임자가 연구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하였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나, 이해의 충돌의 가능성이나 연구비 유용의 가능성을 가지는 만큼 과제책임자가 이해의 충돌을 회피하여 예방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55 Question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성과에서 사업개시 이전에 출판한 논문 등의 연구성과를 기록한 경우 인정할 수 있는가?

논문이 투고된 시점이 과제 시작 전이라면 논문의 연구내용은 그 과제와 상관없이 그 이전에 이미 진행된 과제이므로 해당 과제의 성과물로 판단할 수 없다.

연구성과를 제출한 연구자와 협의하여 관련 사항을 확인한 후 기록에서 삭제하도록 해야 하며 해당 과제의 수행을 통해 얻은 연구 성과만을 포함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056 Question

연구책임자인 지도교수가 과제에 참여한 대학원생 연구원에게 과제에 참여하여 수령한 인건비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한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과제에 정식으로 연구원으로 등록되어 개인통장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연구과제에 참여한 업무의 역할과 그에 대한 임금지급에 대해 사업계획서와 협약을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과제 종료 후 연구책임자인 지도교수가 참여한 대학원생에게 이미 지급된 임금을 반환하라 요청할 때는 그에 합당한 공식적인 이유를 가져야 할 것 이며, 임금반환을 위한 요청을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연구비 지원기관 혹은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연구협약 및 연구비 관리 부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진행되어야만 한다.

만약 지도교수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소속기관의 연구협약 및 연구비 관리 부서 등의 담당자나 해당 연구과제를 관리한 전문기관 사업 담당자와 협의 할 수 있다.

대학원생의 인건비는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057 Question

지도교수가 석사과정생을 졸업시키기 위해 박사과정생인 모 씨의 연구 데이터를 넘겨줄 것을 강요하여 데이터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양도하였고, 해당 석사과정생은 양도 받은 데이터를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자료를 분석하여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연구윤리에 위반하는 사항인가?

다른 학생의 연구결과를 가지고 마치 자신의 연구결과인 것처럼 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는 연구부정행위중 표절에 해당한다.

지도교수의 경우는 타인에게 연구부정행위를 제안 ·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비록 자신의 제자를 위해서라도 용납될 수 없다.

지도교수는 제자가 연구자로서 독립할 수 있도록 연구 역량 및 논문작성, 연구윤리 의식 제고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지도해야 한다. 아무리 제자를 위한 명분일지라도 다른 제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연구자로서 부도덕한 행위임이 명백한 연구결과의 부당한 이전 요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058 Question

의과대학에서 특정학과에 소속된 교수가 자신의 지도학생이 아닌 다른 학과 소속의 대학원생에게 자신의 환자데이터를 포함한 실험자료를 넘겨 논문을 쓰도록 하는 행위는 문제가 되는가?

의료분야에서 환자의 동의를 얻어 정상적으로 수집된 환자데이터를 공유 받아 다른 연구에 활용하고 논문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세부 전공이 다소 다른 연구자가 그 자료를 활용하여 다른 분야의 연구 논문으로도 재사용 할 수 있다.

다만 논문에 자료의 출처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

추가로 소속기관에 설치된 IRB를 통해 환자데이터를 재사용한 2차연구에 대한 연구계획을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059 Question

A기관에 소속된 모 연구원은 자신이 주관연구책임자로 B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들과 함께 협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B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들이 A기관에 소속된 주관연구책임자와 공동 연구자들을 저자로 등재하지 않고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였다. 주관연구기관 책임자가 B기관에 공식적인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가?

공동연구 과제이건 그렇지 않건 간에 연구에 참여하여 기여한 연구자에게 부여되는 저자권에 대하여 연구성과의 발표 이전에 협의를 통하여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저자권 배분과 관련하여 당연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즉 B기관의 연구자들이 A기관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성과를 포함하여 논문을 발표했다면 명백한 표절임과 동시에 부당한 저자 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B연구기관에 관련 내용에 대한 제보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로서의 조사 또한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A와 B, 두 기관이 모두 연구에 참여한 이해관계자인 만큼 대화로서 해결을 모색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저자명을 수정할 수 있는지 등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연구부정행위의 제보와 조사 과정은 보통 긴 시일이 소요되고, 해당 연구에 참여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불이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공동연구에 참여한 동반자적 입장에서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060 Question

사회과학분야 연구진과 의학분야 연구진들이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얻은 자료에 기반하여 기초적인 분석결과를 학술대회에서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이후 그 내용을 바탕으로 공동연구자 간 합의하여 독립변수를 달리하여 세분화하고 각각의 전공에 맞게 새롭게 접근하여 한편은 사회과학 분야 또 다른 한편은 의학분야 논문으로 투고하고자 한다. 다만 서론과 이론적 배경 그리고 분석 결과에 따른 논의는 각각의 분야에 맞춰 선행연구가 사용되어 일치되는 부분이 없지만 똑같은 연구대상자이다 보니 사용한 척도, 연구대상자들의 특성, t-test 및 상관관계 등 분석 결과에서 겹쳐지는 부분이 많이 존재 한다. 이 경우 두 편의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이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하는가?

일반적으로 연구주제와 목적 및 분석방법이 다르다면 동일 연구자료를 가지고 2개 이상의 논문을 출판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두 개의 논문으로 발표해야만 하는 학술적 가치 또는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만약 두 편의 논문이 각각 충분한 학술적 가치 또는 출판의 필요성이 있지 않다면 논문 쪼개기(salami publication)의 의혹이 생길 수 있다. 또한 각 논문에 연구대상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서론 및 방법에 기술하여야 한다.

만약 두 가지 논문 중 한 논문이 먼저 게재되었다면 후행 논문의 경우 논문 투고시에 해당학회 편집인에게 선행논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판단하게 해야 하며 후행 논문에도 반드시 선행 논문의 존재에 대해 밝히고 선행 논문과 후속 논문의 차이에 대해서도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061 Question

선행연구에 참여한 저자들이 후속연구에서 저자의 순서를 바꾸어 연구결과를 출판할 수 있는가?

선행연구에서 저자(Author)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저자들 간에 후속연구에 대한 연구의 수행과 관련한 역할을 정하고, 저자권 관련 협의를 하였다면 후속연구에서 저자의 순서를 바꾸어 출판하는 것이 가능하다.

저자의 순서를 정하는 가장 큰 기준은 해당연구에서의 기여한 정도라 할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 선행연구와 달리 연구에 참여하는 역할과 기여하는 정도가 달라졌다면 이를 반영하여 저자의 순서를 바꾸는 것은 정당하며 당연한 것이다.

062 Question

한 연구실에서 3명이 공동으로 연구한 프로젝트의 결과를 이용하여 박사과정의 연구원이 학위논문을 제출하고 졸업하였다. 공동연구의 결과를 학술지에 투고하는 경우 학위 논문을 제출한 바 있는 박사과정 연구원을 공동저자로 등록하여 출판하는 경우 중복게재에 해당하는가?

일반적으로 이공계에서는 학위논문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중복게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아울러 학위논문의 내용과 학술지 논문은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문장이 동일하지는 않겠으나 실험 표, 그래프 등 자료가 똑같은 것을 사용할 경우 참고문헌에 학위 논문의 존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3명이 공동연구를 하였다고 하니 3명 모두 저자로 등재되어야 하고 논문의 기여도에 따라 제1저자 등의 저자 순서가 결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 시 이러한 사항을 모두 고지하여 학술지 관계자로부터 피드백을 수렴하고 만약 필요한 조치 등이 있다면 수렴하는 것이 좋다.

063 Question

모협회의 연구과제에 참여한바 있는 A 연구원이 과제 종료 후 연구 용역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였다. 이후 모 대학의 B 교수는 연구책임자로, A 연구원은 공동연구자로 정부 용역과제를 수행 한 후 정부용역 보고서에 이전에 모협회에 제출하였던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협회의 동의 및 출처표기 없이 상당부분을 포함하여 제출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연구윤리와 저작권을 위반한 것인가?

학계에서 통용되는 정당한 이차출판 또는 연구결과의 재사용 조건은 이전 연구결과물의 저작권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과정도 있지만, 이전 연구결과임을 명백히 밝혀 후속 연구결과물과의 구별이 가능하도록 하는 과정도 포함하고 있다.

즉 후속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에 필연적으로 선행 연구결과가 필요할 시에는 그 출처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즉 인용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연구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후속 연구결과물을 접하는 독자나 사용자로 하여금 모든 내용이 신규결과로 받아들이게 하는 우를 범하게 되므로 연구결과를 재사용 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야 한다. 이는 논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보고서나, 개인 저술 등에도 모두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다.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비록 이전 연구결과물에 대해 인용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연구결과물을 재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신규 연구결과의 가치가 결여되므로 내용이 매우 부실한 보고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연구보고서에서 명확하게 이전 연구결과와 후속 연구결과물을 분리하였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는 평가의 결과가 달라질 여지도 사실 존재한다. 따라서 A와 B연구자가 선행 보고서를 재사용하는 과정에서 모협회의 동의를 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후속 보고서에서 명백히 밝히고 재사용과 관련한 적절한 표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여전히 이중게제 및 자기표절의 소지를 가지게 된다.

연구윤리와 저작권은 유관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결과의 판정 주체나 성격이 다르다. 연구윤리는 주로 연구자의 연구성과 발표와 관련하여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연구부정행위 및 진실성 차원에서 연구분야의 통상적인 범례와 상식선에서 판정을 하며 연구부정의 경우 연구자에 대한 징계로 귀결되며 저작권은 법률에 의거하여 연구결과의 소유권의 구별 및 지재권 침해등과 관련한 판정이 주로 이루어진다.(표절의 경우에도 법정에서 판정되어지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요구 하거나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판정 결과를 수용치 않았을 경우가 대부분이다.)

064 Question

2년간의 조사보고서 2권을 근거로 하여 2인의 공저자 가운데 한명이 기존 보고서의 90%가량을 그대로 사용하여 소속 연구원과 협의 없이 책자로 발간하였다. 중복게재에 해당하는가?

표절, 중복게재 등의 판정과 관련해서는 국내 연구윤리 관련 규정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관련 부처의 해당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부정의 제보 접수 시, 관련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서 연구진실성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내용을 심층 조사하여 그 결과에 의하여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사항은 민사로써 해결이 되고 있다.

만약 본 건의 소속 연구원에 연구윤리 및 연구부정행위 조사 또는 연구보고서의 사용과 관련된 가이드가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적용을 하여야 한다.

연구자의 연구결과 재활용과 관련해서는 연구보고서의 저작권 소유가 소속 연구원에 귀속되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가 소속 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이 가능한 경우라면 소속 연구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출처표기를 포함한 사용허가를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과제에 참여한 공동연구자와의 저자권(authorship) 논의를 통하여 후속 연구성과 (저서, 논문 등)에서의 저자권 등록 문제를 협의하여 재출판 또는 재활용 할 수 있다.

연구성과의 재출판 혹은 재사용 시에는 사전 연구결과임을 반드시 밝혀야 하며, 연구의 수혜(지원 여부 등) 사실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연구업적 및 연구성과를 제출하거나 사용할 때에는 재출판 사항을 표기하여 연구성과가 중복 사용되는 문제를 예방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당 연구자가 속한 연구기관에 재출판 관련 규정이나 가이드가 없는 상황이라면 연구부정의 측면으로 접근하기 이전에, 안내 및 교육 등을 통해 권고하고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약 관련 규정이 존재한다면 연구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한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제보 또는 회부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정을 할 수 있다. 판정 이후에는 후속 저작물의 중복게재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CHAPTER 5

연구부정행위

Q. 65 ~ Q. 81

065 Question

논문에 포함된 사진이 실제 실험모형#1의 사진이 아니라 다른 실험모형#2의 실험전후 사진을 논문에 싣거나, 실험전후의 결과를 보다 잘 보여주기 위하여 실험모형#1과 동일한 실험모형#2로 실험전후 결과 사진을 논문에 포함시키는 경우 연구실험과정에 문제가 없으며, 실험모형을 이용하여 해당 실험과정을 담은 동영상이 있고, 이 실험결과에 대한 논문을 작성하는 중 실험전후의 결과를 찍은 사진을 논문에 게재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1) 실제 실험에 사용된(동영상에 찍힌 실험모형#1)의 실험전후 사진이 아니라, 다른 실험모형#2의 실험전후 사진이 게재된 경우

2) 실험모형#1로 얻은 실험결과를 논문에 실었으나, 실험전후의 결과를 보다 잘 보여주기 위하여 실험모형#1과 동일한 실험모형#2로 실험전과 후의 결과를 만들어 사진을 찍은 경우

각각 1항과 2항의 경우, 이를 연구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가?

1. 각각 1항과 2항의 경우, 이를 연구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가?
2. 논문을 출판하기 이전이라면,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 논문 내용에는 결과를 보여주는 사진의 게재와 함께 그 사진에 대한 설명을 넣어야 할 것이다. 즉, 그 결과는 어떠한 실험조건과 실험과정을 거쳐 에서 얻은 것인지를 문자로 설명해야 한다.
3. 실험모형#1과 실험모형#2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논문에 설명하는 내용(실험조건과 실험절차)은 실험모형#1에 대한 것으로 하고, 결과를 표현하는 사진은 실험모형#2에 대한 것을 게재하면서 실험모형#1의 결과인 것처럼 설명한다면 "연구부정"의 요건을 가진다.
   - 논문에 문자로 설명하는 내용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진은 일치해야 한다. 실험모형#2의 결과가 더 좋게 나왔다면 그 사진을 게재하고 실험조건과 절차를 실험모형#2의 것으로 설명하여야만 한다.
   - 연구부정의 예를 알아보자. 측정 data point를 10개 만들어 내는 경우, 2개의 측정 data가 예상에서 벗어난다고 합시다. 이때 그 2개 point는 배제하고 8개 data만 표시하는 것도 "데이터 조작(변조)"에 포함된다. 원칙대로 하려면 그 2개 point도 논문내용에 포함시키고 왜 예상을 벗어났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4. 논문의 내용에서 그 사진이 결정적 요소(논문의 최종적 결과)라면 더욱 엄격하게 원칙을 지켜야만 한다.
   - 실험이 어렵거나 경비가 많이 소요되어 여러 가지 실험모형을 시도하기 어려운 경우, 실험모형#1과 실험모형#2가 각각 불완전하지만 두 실험의 결과를 통합하면 하나의 성공적 실험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 본 질문과 같은 상황을 생각하기 쉽지만, 이를 통합할 경우 연구진실성(충실성)에 흠이 생기고,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다.

066 Question

연구자 A와 B가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때 공동연구에 참여한 A와 B가 각자 다른 주제로 논문을 작성하면서 공동으로 얻은 결과를 서로 다른 주제로 논문을 작성하면서 활용하여도 되는가? 만약 어느 한 연구자가 먼저 그 데이터를 포함시켜 논문을 투고하였을 경우 다른 연구원은 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인가?

공동 연구를 통해 얻은 동일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로 다른 연구주제와 목적이 다른 논문을 출판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개의 논문은 각각이 그 학술적 가치 또는 필요성이 충분이 있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료의 중복사용 혹은 논문 쪼개기(salami publication)의 의혹이 생길 수 있다.

각 논문에는 연구대상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서론 및 방법에 기술하여야 한다. 만약 두 가지 논문 중 한 논문이 먼저 개재되었다면 후속 논문의 경우 논문 투고 시에 해당학회 편집인에게 선행논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판단하게 해야 한다.

067 Question

논문 표절 기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표절검색 프로그램에서의 표절을 결정하는 유사도율(%)이나 명확한 기준, 지침 등이 있는가?

표절검색 프로그램의 유사율은 표절을 판정하는 기준이 되지는 못하며, 유사도가 높은 논문을 검출하거나 참고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학문분야에 따라 유사도가 높아도 실제로 표절이 아닐 수 있으며, 적은 유사도를 보일지라도 연구의 핵심 데이터에서의 표절이라면 실제로 표절로 판정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유사도(%)를 지정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유사도를 지정하여 표절을 판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등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의 연구부정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하여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표절검색 프로그램의 역할과 유용성에 대해서는 대표적 표절검색 프로그램인 'ithenticate'와 'turn it in'을 서비스하고 있는 iParadigm 社가 개최한 세미나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iParadigm 社의 비즈니스 매니저는 표절검색 프로그램에서의 유사도만으로 표절을 판정하기에는 너무 많은 변수가 존재하며, 최종 판정 과정에서는 사람(전문가)이 필수적으로 개입을 하여 종합적인 조사를 수행 후에 판정해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2013.04.09. 건국대 '연구윤리 및 표절방지 세미나')

정리하여 보자면 표절검색 프로그램에서의 유사도(%)는 표절의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식별 함으로써, 본격적인 검증에 앞서 사전 검출자료로서 활용 할 수 있다. 실제로 표절로서의 판정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등에서 밝힌 프로세스에 의하여 검증주체의 조사위원회에서 해당 의혹에 대한 혐의를 전문가가 다각도로 조사하여 판정하여야 하는 필요성에 따라 현재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및 판정 프로세스가 정립되었다.

국내에서도 구체적인 표절 판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려고 하였으나, 학계의 다양한 변수 등이 반영되지 못하여 공표되지는 못하였다. 표절과 관련한 비교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서울대학 연구윤리 지침과, 한국학술단체 총연합회의 연구윤리 지침을 예로 들 수 있다.

참조 1. 서울대 ' 연구윤리 지침' | http://www.cre.or.kr/article/regulation/1384633
2.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 연구윤리 지침' | http://www.cre.or.kr/article/regulation_edu/1384041

068 Question

A는 교수의 지도하에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려고 한다. 그런데 논문 작성 과정 중 특정 물질에 대한 간단한 분석 데이터가 필요하여 이를 같은 연구실에 있는 대학원생 B에게 부탁하여 데이터를 얻었고 이를 논문에 데이터로 사용하고자 한다. 대학원생 B는 단순히 측정을 통한 데이터를 제공하였을 뿐 A의 논문 초고 작성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연구진행과정중에도 중요한 사항에 대한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때 B는 논문에 공저자로 등재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s Editiors, ICMJE) 에서는 저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연구의 개념을 설정하고 설계를 하거나 자료의 획득, 분석, 해석에 상당 부분 기여를 하고

둘째, 논문 초안의 작성에 관여하고,

셋째, 반드시 투고 전에 최종본을 읽고 논문투고를 승인해야 한다는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만약 연구에 다소 기여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자격을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감사의 글(acknowledgements)'에 적는 것이 적절하다. 논문의 저자는 그 논문에 대해 공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므로 저자는 논문의 내용을 알고 있고, 데이터의 생산과정, 방법, 그 해석 및 그 가치의 타당성에 대해 논리적 견해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원고에 대해 코멘트하거나 실험의 목적을 인식치 못한 채 데이터 측정만을 해서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B는 저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감사의 글'에 이름을 명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069 Question

기념 논문집에 발표한 논문에서 논문저자가 조사하거나 분석하지 않는 것을 자기가 한 것처럼 기술하였고, 논문 본문의 80~90%를 오려붙이기 하여 사용했으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논문을 발견하였다. 연구부정행위 제보는 어디에 해야 하며, 조사는 어디에서 진행 되는가?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접수처는 국가 R&D 부처의 장 및 전문기관(과제 관리기관), 연구기관(대학, 출연연)으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등에 명시하고 있다. 이 외에는 학회 등의 학술단체가 제보를 접수할 수 있다.

참조.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4)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정 2014. 3. 24. 교육부 훈령 제60호

제10조(연구부정행위 처리)

①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 및 전문기관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였거나 그 발생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내용을 이관하여 조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 또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주체

각 연구부정행위 제보가 접수되면 연구부정행위 조사 권한을 갖는 검증주체에 제보를 이관하여야 한다.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주체는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일부 조건에 해당할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정 2014. 3. 24. 교육부 훈령 제60호

제13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

② 연구기관 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전문기관에 직접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070 Question

연구부정행위 중 부당한 논문저자표시에 대해서 관련규정은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저자의 자격을 갖춘자가 저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에서, 부당한 저자를 부여한 자가 연구부정행위의 모든 책임을 지며,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받은 자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인가?

연구부정행위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는 문제된 논문의 모든 저자이다. 따라서 일단 교신저자와 선물저자(혹은 명예저자) 모두 피조사자가 되며 사건의 진행 경과에 따라 피조사자의 책임범위가 결정된다.

부당한 논문저자표시는 일반적으로 연구책임자인 교신저자가 저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교신저자가 선물저자의 동의 없이 저자자격을 부여한 경우 부정행위의 책임은 100% 교신저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당하게 저저가 된 명예저자가 교신저자와의 상호 합의에 의거하여 저자 자격을 부여받았다면 명예저자도 당연히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한다. 그러나 여전히 주책임자는 교신저자가 가장 큰 책임을 가지게 된다.

참조.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4)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정 2014. 3. 24. 교육부 훈령 제60호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이 지침에서 정하는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071 Question

A는 특정 B기관에 소속된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B 기관에 제보를 하여 예비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때 제보자 A는 B기관에 예비조사위원회 명단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가?

예비조사는 제보자의 제보사실 즉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해 공식적인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로써, 말 그대로 예비절차에 해당한다. 아울러 본조사와 달리 예비조사의 주체는 연구기관이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조사위원에 따른 제한사항과 제보자에게 위원 선정 안내와 관련한 의무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제보자가 B기관에 예비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B기관이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본조사의 경우에는 본조사 착수 전에 반드시 제보자에게 조사위원회의 위원명단을 통보하여야만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연구재단에서 발행한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을 참고할 수 있다. 책자는 연구윤리 및 연구부정행위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졌지만, 각 조사단계에 대한 안내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제보자에게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참고.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한국연구재단, 2014) | http://www.cre.or.kr/article/textbook/1384244

072 Question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정될 경우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가?

연구부정행위 제보라는 것은 사실에 기초하여 연구자의 부정한 행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이를 조사하여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해당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제공하는 의미를 가지는 좋은 시민의식이자 전문가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당한 제보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관련 조사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야 말로 신뢰받는 연구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는 밑거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신뢰받는 연구문화는 건전한 제보자 즉 내부고발자가 보호될 수 있어야만 한다. 만약 제보자가 보호받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다면, 선뜻 제보를 실행에 옮기기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연구부정행위 자체가 드러나기 어려운 폐쇄적인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이나 미래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13.8)등에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제보자가 해당 제보로 인하여 인사 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관실무자의 제보자 신원의 비밀 유지 등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결과에 무관하게 제보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여야하고, 소속 기관으로부터 인사상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연구부정행위는 조사위원회의 최종 판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만큼 제보자가 사전에 언론 등에 해당 의혹을 고의적 · 악의적 목적으로 노출하여 피조사자의 명예 등을 실추하였을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소송제기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은 제보자로서도 유의하여야 한다.

참고 1.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2014.3)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1항 5호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연구부정행위로 정의)
제9조(연구윤리 자체규정 마련) 1항 5호(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방안)
제11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2. [미래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2013.8)
제5조 5호(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제13조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073 Question

연구부정행위 제보 이후 해당 기관의 예비조사위원회로부터 출석 및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이 때 출석에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는가?

예비조사는 제보자의 제보사실 즉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해 공식적인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로서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본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제보자의 출석과 진술 등은 본조사에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제보자는 제보 이후 원활한 진실성 검증을 위해 출석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을 경우, 이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제보자는 불이익 방지와 신원 보호의 대상인 만큼 조사기관으로부터 이러한 조치가 잘 취해질 것이 보장된다면 제보자는 출석 및 인터뷰 요청에 응할 수 있다. 그러나 불이익이 예상될 경우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다.

074 Question

A 교수는 학부학생 B와 함께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하여 학술지에 투고하였다. 논문은 아직 출판된 상태가 아니고 학술지에서 게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심사 중에 있다. 해당 투고 논문에서 A 교수는 학부학생 B를 공동저자로 넣지 않았으나 참고사항에 학생의 이름과 함께 상황을 설명하는 글을 남겼다. 그런데 A 교수의 소속 기관에 B학생이 제외된 체 A 교수만 저자로 등재되어 투고한 A 교수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라는 제보가 접수되었다. A 교수의 소속기관에서는 논문이 출판되지 않고 심사 중에 있음에도 이를 조사하여야 하는가?

논문의 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구를 계획하거나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상당한 참여를 하고, 학문적으로 주요한 내용에 기여를 해야 한다. 논문의 저자가 반드시 박사학위 과정 혹은 수료이상일 필요는 없다.

저자가 저자 자격 기준을 충족한다면 학부생이라도 논문의 공저자로 등재 가능하다. 만일 제보자의 주장대로 학부생이 작성한 내용을 학부생을 저자로 포함하지 않고 발표하였다면 이는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이다. 다만 현재 논문이 게재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투고되어 심사중에 있는 상태이므로 논문 수정과정에서 해당 학생을 공저자로 등재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다음으로 사건의 조사 착수 여부인데 논문이 출판되지 않고 투고된 상황이라도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심의는 가능하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은 연구의 제안 · 수행 · 심사 · 결과의 보고와 발표 등 연구개발의 전 범위에 대해 적용되므로 사건의 조사는 가능하다. 따라서 제보가 접수되었으므로 예비조사는 수행하여야 한다. 예비조사는 외부인사가 포함될 필요는 없고 대학 연구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혹은 대학 자체 규정에 명시된 예비조사 주체가 맡아서 하면 된다. 예비조사에서는 사건의 성격상 본조사가 당장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아니므로 논문 심사과정에서 해당 논문에 공동저자를 수정과정을 통해 포함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075 Question

대학의 전임교원 신규 채용심사를 진행하는데 지원자가 제출한 논문에서 표절과 중복게재 등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때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주체는 어디가 되어야 하는가?

정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주체는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신규 채용 신청자가 논문을 발표한 당시의 대학이 검증주체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신규 채용 지원자의 연구 수행당시 소속기관에 검증을 의뢰해야 한다.

다만 논문 검증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교수 공채를 진행중에 있는 해당대학은 빠른 일처리를 위하여 지원자의 연구성과물에 대해 심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제보의 접수에 따른 통상적인 연구부정행위 검증과 달리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성과를 인정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 채용에 활용하면 된다.

따라서 신규채용 대학은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주체가 아닌 만큼 굳이 교육부 훈령이나 대학 연구윤리 규정에서 정하는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 (외부인이 포함된 본조사, 판정, 통보, 사후조치)를 적용할 필요가 없이 신규 채용자가 제출한 연구성과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제한하여야하고 연구부정행위의 판정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의 소속기관에서 정식 조사 프로세스에 의해 조사를 진행하고 판정해야 한다.

076 Question

모 연구자가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 대해 논문의 가설이 충분히 검증 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해당 학술지를 발행한 학회에서 논문을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가설 재검증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를 연구자가 소속된 연구기관에 통보 하였다. 이때 연구자의 소속기관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의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하고자 한다. 문제는 없는가?

학회의 조사 결과만을 토대로 대학의 자체 조사 없이 윤리위원회가 판정을 해서는 안 된다. 학회의 조사 결과는 가설재검증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만 알려줄 뿐, 연구자의 윤리성에 대해서 판단할 수도 없고 판단할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소속기과는 본조사 과정을 통해 피조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 후 판정하여야 한다.

077 Question

2007년 정부의 연규윤리 지침 제정 당시에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시효가 5년이었으나 2011년 개정된 지침에는 검증시효가 삭제 되었다. 그러나 모 대학의 검증시효는 여전히 5년으로 남아 있다. 이 경우 5년 이전에 작성된 학위논문은 검증의 대상에서 제외 되는가?

현재 많은 연구기관이 갖고 있는 연구윤리규정에는 과거의 정부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5년의 검증시효 조항을 남겨두고 있다. 즉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은 학위논문, 교내 학술연구 등에는 시효를 적용할 수 있으나 여전히 국가 연구개발사업이나 학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과거의 모든 연구가 검증 대상이 된다. 연구윤리에 관한 시효는 징계에 관한 시효 규정과는 전혀 무관하며 비록 징계에 해당하는 시효가 경과했다고 하더라도 연구진실성은 검증되어야 한다.

또한 대학에서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시효가 없어야 한다는 학계의 중론과 규정 지침의 개정 사항을 받아들여 신속하게 관련 규정의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078 Question

모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던 중에 표절과 중복게재 의혹이 제기되었다. 학술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우선 표절 혹은 중복게재의 여부와 그 수위 정도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정도가 경미하다면 저자와 협의하여 그 출처를 밝히고 적절하게 인용을 하는 수준으로 논문을 수정한 다음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표절 혹은 중복게재의 정도가 심각하여 부분적인 수정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는 저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해당 학술지의 방침(일정기간동안 논문 게재금지)을 전달해야 한다. 또한 이전 논문의 저작권자(저자와 학술지 발행인)와 저자의 소속 연구기관에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는 학계의 연구윤리에 대한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매우 중요하다.

079 Question

이공계 연구분야의 저자가 이전에 발표한 논문에서 기술한 바 있는 실험 방법으로 새로운 실험 데이터를 얻어 새로운 논문을 작성할 때 자기표절에 해당하는가?

이공계 연구에서 이전에 발표한 논문의 experimental section 부분과 상당한 부분을 동일하게 기술한다 하더라도 자기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표절 검색시스템에서도 이 부분은 제외하고 문장의 유사도를 검색한다.

080 Question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이 가능한가? 또한 국내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 연구자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외국어로 다시 작성하여 해외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이 가능한가?

정당한 2차 출판을 위한 사전 동의를 확보하고 2차 출판 내용에서 그 출처를 밝히면 가능하다. 일반적인 중복게재는 학술지 논문 간에 적용되는 것으로 학위논문의 학술지 출판은 대부분의 학문분야에서 허용하고 있다.

또한 국내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외국어로 다시 작성하여 해외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독자군이 다를 경우 1차와 2차 출판 학술지에 해당 논문의 재출판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여 동의를 얻고, 2차 출판 학술지에 원출처를 명확히 밝힌다면 이 역시 정당한 2차 출판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이며, 해당 학술지의 지침이나 가이드가 우선하게 될 것 이므로 해당 학술지의 지침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 1차, 2차 논문으로 동일한 내용의 논문 두 편이 발행되었으므로 이를 모두 연구업적물로 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하나의 논문만을 업적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081 Question

이공계 분야의 지도교수가 자신이 지도한 대학원생의 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연구과제의 결과물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행위가 연구윤리위반에 해당하는가?

이공계의 연구는 교수와 대학원생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대학원생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연구를 수행한 후 그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학위 논문을 작성한다. 따라서 대학원생의 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학위 논문 제출 이후에 이를 바탕으로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에 공동으로 연구한 대학원생이 저자로 등재되지 않았다면 연구부정 행위에 해당한다.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CHAPTER 6

연구성과 관리

Q. 82 ~ Q. 83

082 Question

A기관에 근무하던 연구자가 B기관으로 소속을 옮긴 후 A근무기간에서 재직 시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투고하려는 경우 소속 표기는 어떻게 하는가?

저자의 소속은 실험 및 자료 분석 등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를 수행한 시기와 논문을 발표할 시기에 저자의 소속이 다른 경우는 실제 연구가 수행할 당시의 기관으로 소속표기를 하고 논문 표지 하단에 저자의 현 소속기관을 따로 기재하면 된다. 이러한 방식은 교신저자 뿐 아니라 제1저자 혹은 공저자에게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083 Question

1) 연구수행 후 위탁기관에서 연구보고서 내용으로 논문으로 출판했다. 주관연구기관에서는 현장 모형 시험 장치를 주관기관에서 만들었으며 이를 이용한 연구이기에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논문을 작성한 것은 표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문헌, 감사의 글을 작성했으며 한두 개 그림에 인용문헌을 달지 못하였다. 표절에 포함되는가?

2) 연구결과의 소유가 주관기관에 있으며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논문 작성이 연구윤리를 위반했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확인서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가?

1) 연구의 수행 전에 연구와 관련된 협약서 내지 계약서에 연구 결과물의 사용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의 파악이 필요하다. 다행인 것은 해당 연구를 직접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학술지 논문으로 출판하는 과정에서 선행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문헌으로 표기하고 감사의 글을 작성한 점이다. 출처표기를 빠트리지 않은 다른 부분에서는 인용법을 빠트리지 않은 것으로 가정한다면 고의적인 중복게재나 표절로 판정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인용법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음을 안내하고, 출판된 논문에서 수정이 가능한지 해당 학회에 문의하여 관련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확인서로 인한 법적 불리 여부 문제는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므로 판단하기 쉽지 않다. 참고로 이러한 주관연구기관과 연구자의 연구결과물 소유와 관련된 법적 사례 등에서는 연구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판례도 확인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부수적으로는 저작권 분야의 전문가와의 전문적인 대응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기획 · 편집

고은정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연구윤리정보센터 센터장
권태환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연구윤리정보센터 부연구위원
이지민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연구윤리정보센터 부연구위원

연구 · 집필

이원용 연세대학교 화학과 교수
이인재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발 행 처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발 행 인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원장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301호
전 화 042)820-5615
팩 스 042)820-5690
홈 페 이 지 www.cre.or.kr

디자인/인쇄 심원기획 T. 042)486-5777

I S B N 978-89-968952-9-9

이 책자는 201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결과의 일부를 출판한 것임(NRF-2014-연구윤리)